

"오늘도 다정한 인사와 밝은 미소를..."

## 제12기 2차 전국이사회

- ▣ 일시 : 2021년 5월 15일(토) 오후3시
- ▣ 장소 : 대전유성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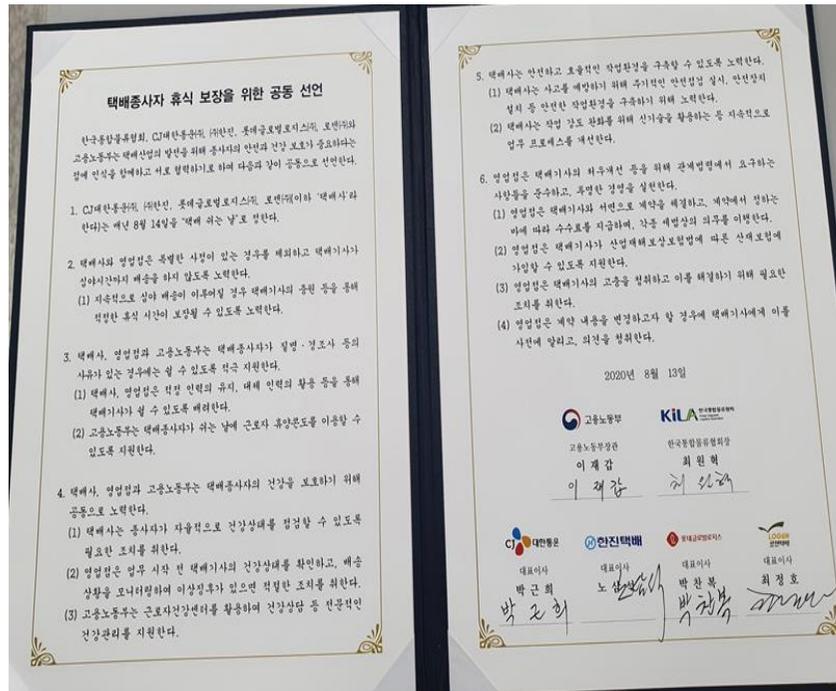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 협의회장 업무 보고

(2020.8~2021.5)

항목	일자	주요 내용
<p><b>고용노동부장관 간담회 참석</b></p>	<p>2020.8.13</p>	<p>택배종사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한 택배휴무일 제정으로 현장의 택배사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와 택배사 대표들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였음</p> <p>&lt;참석&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 : 박찬복 대표이사, 오국진 상무, 이용감 팀장</li> <li>- 협의회 : 서성길 회장, 오염석 상임부회장</li> </ul> <p>&lt;의결사항&gt; <b>매년 8월 14일은 택배없는 날로 규정</b></p>



항목	일자	주요 내용
<p><b>화양대리점 배송지원</b></p>	<p>2020.8.30</p>	<p>갑작스런 택배사원 3명의 이탈로 인해 많은 물량이 미배송되어 문제가 되고있는 군자동 및 화양동 지역에 휴일 배송지원을 실시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 : 성동구 군자동, 화양동 지역</li> <li>- 배송물량 : 약 4,000 box</li> <li>- 지원인원 : 협의회장, 재무국장, 수도권동부부회장 외 10명</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항목	일자	주요 내용																								
<p><b>국토부 간담회</b></p>	<p>2020.9.29</p>	<p>택배연대노조측의 입장만을 담아 현장과는 괴리가 있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법안과는 별도로 국토부에서는 택배사업자와 대리점의 입장을 함께 고려한 수정 법안을 준비중에 있기에 쟁점 사안별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였음</p> <p>&lt;참석&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부 : 김배성(물류정책과장), 전형필(물류정책관), 이병민(물류정책과 사무관)</li> <li>- 협의회 : 송길섭 전임회장, 김정기 사무국장 (CJ대한통운 2명, 로젠 1명 참석)</li> </ul> <table border="1" data-bbox="663 694 2089 1297"> <thead> <tr> <th data-bbox="663 694 1335 735">국토부안</th> <th data-bbox="1337 694 2000 735">대리점협의회의 의견</th> <th data-bbox="2002 694 2089 73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63 737 1335 826"> <p><b>1. 택배사원 6년 계약 인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감가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수정이 어려움</li> </ul> </td> <td data-bbox="1337 737 2000 826"> <p>택배사업자와 <b>영업점의 계약기간도 6년 동일 적용</b></p> </td> <td data-bbox="2002 737 2089 826"></td> </tr> <tr> <td data-bbox="663 828 1335 962"> <p><b>2. 분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점 : 집화, 분류, 배송 등</li> <li>- 택배서비스종사자 : 집화, 배송 등</li> </ul> </td> <td data-bbox="1337 828 2000 962"> <p>별도의 분류 전문 사업자 규정 필요 (영업점 &amp; 종사자 <b>동일 적용</b>)</p> </td> <td data-bbox="2002 828 2089 962"></td> </tr> <tr> <td data-bbox="663 963 1335 1050"> <p><b>3. 종사자 휴게시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와 영업점이 구비</li> </ul> </td> <td data-bbox="1337 963 2000 1050"> <p>영업점의 <b>적용 제외</b></p> </td> <td data-bbox="2002 963 2089 1050"></td> </tr> <tr> <td data-bbox="663 1051 1335 1093"> <p><b>4. 정책협의회 구성</b></p> </td> <td data-bbox="1337 1051 2000 1093"> <p>영업점도 <b>참여 요청</b></p> </td> <td data-bbox="2002 1051 2089 1093"></td> </tr> <tr> <td data-bbox="663 1094 1335 1181"> <p><b>5. 조세에 대한 특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에 대한 조세 특례 등 적용 할 수 있음</li> </ul> </td> <td data-bbox="1337 1094 2000 1181"> <p>영업점도 <b>적용 요청</b></p> </td> <td data-bbox="2002 1094 2089 1181"></td> </tr> <tr> <td data-bbox="663 1182 1335 1259"> <p><b>6. 표준계약서 도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상호 간 도입 적용</li> </ul> </td> <td data-bbox="1337 1182 2000 1259"> <p><b>사업자와 영업점 간에도 동일 적용</b></p> </td> <td data-bbox="2002 1182 2089 1259"></td> </tr> <tr> <td data-bbox="663 1260 1335 1297"> <p><b>7. 협회의 설립</b></p> </td> <td data-bbox="1337 1260 2000 1297"> <p>국토부의 <b>설립인가</b> 요청</p> </td> <td data-bbox="2002 1260 2089 1297"></td> </tr> </tbody> </table>	국토부안	대리점협의회의 의견	비고	<p><b>1. 택배사원 6년 계약 인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감가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수정이 어려움</li> </ul>	<p>택배사업자와 <b>영업점의 계약기간도 6년 동일 적용</b></p>		<p><b>2. 분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점 : 집화, 분류, 배송 등</li> <li>- 택배서비스종사자 : 집화, 배송 등</li> </ul>	<p>별도의 분류 전문 사업자 규정 필요 (영업점 &amp; 종사자 <b>동일 적용</b>)</p>		<p><b>3. 종사자 휴게시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와 영업점이 구비</li> </ul>	<p>영업점의 <b>적용 제외</b></p>		<p><b>4. 정책협의회 구성</b></p>	<p>영업점도 <b>참여 요청</b></p>		<p><b>5. 조세에 대한 특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에 대한 조세 특례 등 적용 할 수 있음</li> </ul>	<p>영업점도 <b>적용 요청</b></p>		<p><b>6. 표준계약서 도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상호 간 도입 적용</li> </ul>	<p><b>사업자와 영업점 간에도 동일 적용</b></p>		<p><b>7. 협회의 설립</b></p>	<p>국토부의 <b>설립인가</b> 요청</p>	
국토부안	대리점협의회의 의견	비고																								
<p><b>1. 택배사원 6년 계약 인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감가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수정이 어려움</li> </ul>	<p>택배사업자와 <b>영업점의 계약기간도 6년 동일 적용</b></p>																									
<p><b>2. 분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점 : 집화, 분류, 배송 등</li> <li>- 택배서비스종사자 : 집화, 배송 등</li> </ul>	<p>별도의 분류 전문 사업자 규정 필요 (영업점 &amp; 종사자 <b>동일 적용</b>)</p>																									
<p><b>3. 종사자 휴게시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와 영업점이 구비</li> </ul>	<p>영업점의 <b>적용 제외</b></p>																									
<p><b>4. 정책협의회 구성</b></p>	<p>영업점도 <b>참여 요청</b></p>																									
<p><b>5. 조세에 대한 특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에 대한 조세 특례 등 적용 할 수 있음</li> </ul>	<p>영업점도 <b>적용 요청</b></p>																									
<p><b>6. 표준계약서 도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상호 간 도입 적용</li> </ul>	<p><b>사업자와 영업점 간에도 동일 적용</b></p>																									
<p><b>7. 협회의 설립</b></p>	<p>국토부의 <b>설립인가</b> 요청</p>																									

항목	일자	주요 내용	
본사 업무제안	2020.10.19	구분	대리점협의회 제안내역
		물성개선	1) 영업 경쟁력이 약한 저단가 소형화물에 대한 단가 가이드라인에 시장성 반영, 탄력적 운영 2) 120CM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단가유지 & 이상은 변경안 적용 - 집하 그룹구분의 차등적용 철폐 - 이미 공헌이익으로 판단중 3) 타사 유입 물량에 대한 선별 및 유치시 적정운임 준수 ex) 토박스 공박스 등 유입물량에 대한 재검토 및 적정단가 확인 4) 부피 작은 중량물에 대한 적정운임 검토 5) 물 등 음료수 합포장 물량과 본사개발 저단가 중량물에 대한 적정단가 점검 필요 6) 신선식품(냉장냉동 등) 물품에 대한 별도운임 적용
		터미널 협력업체 관리	1) 업력이 떨어지는 협력업체에 대한 규제 및 계약갱신 재검토 : 업체평가에 협의회 의견 반영 2) 숙련된 현장 분류작업원에 대한 적정 임금지급 및 확보방안 마련 - 필요시 본사에서 관리 3) 특수기 기간동안 별도 추가수수료 지급 및 관리강화 4) 현장 투입인력에 대한 통제 강화 (지문 인식 등)
		터미널 운영확대	1) 휴일 터미널의 정상운영 2) 월~수요일 조기작업 실시 (바닥짐은 대리점 물량입고전에 선처리) 3) 셔틀차량의 입고시간 및 구간 출발시간 엄수 4) 신선식품(냉장냉동 등)은 반드시 차량후미 적재를 통한 당일 연계 실시
		셔틀차량 정시출발	1) 터미널 분류작업 종료시간 : 오전 9시 2) 각 집배센터 및 셔틀연계 점소 도착시간 : 오전 10시 30분 이내
		연계화물 관리	1) 각 터미널 컨테이너를 이용한 미분류 화물 적재공간 확보 : 임대 또는 매입 - 권역내 집하물량 & 터미널 창고 출고물량에 대한 별도 적재차량 운영 2) 화물 선입선출의 원칙 준수 : 소형 적입물량 등 3) 화물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스캔 철저 시행

항목	일자	주요 내용	
<p><b>본사 업무제안</b></p>	<p>2020.10.19</p>	<p><b>구분</b></p>	<p><b>대리점협의회 제안내역</b></p>
		<p><b>출력제한</b></p>	<p>1) 홈쇼핑 등 자출 거래업체에 대한 동일 적용 / 불가시 입고물량 통제방안 마련 2) 이전 주간실적이 아닌 전년도 대비 실적 반영</p>
		<p><b>신규투자 확대</b></p>	<p>1) 휠소타 조기 도입 2) 차량 접안대수 확대, 우천시 비가람막 제공, 냉온수기 추가 설치 등 분류환경 개선 등 3) 집배센타 상하차비 적용 제외 4) 자차셔틀 대리점에 대한 형평성 고려 - 상하차비, 자동스캔장치 지원 등 검토 - 셔틀운행 거리별 세분화 및 수수료율 재조정 - 대리점 개발 직택배 물량에 대한 차량배차 동일 적용</p>
		<p><b>기타 제안</b></p>	<p>1) 근무복 신청의 간소화 : 택배사원 APP활용 2) 비규격 패널티에 대한 공정성 위배여부 검토 ( <b>신규정 미동의를 이전 규정 적용/병행 문제</b> 등) 3) BCR 판독 시스템 개선 (찾은 오측정 발생으로 불필요한 업무 증가) ex) 2356-8112-8690 측정자료 ---&gt; 2358-6050-6243 사진 첨부 4) 롯데ON 운송장 개선 : 글씨크기 확대 + 배송사원 출력</p>
<p><b>국토부 간담회</b></p>	<p>2020.10.20</p>	<p>택배사원의 과로사 문제와 관련 국토부 주재 회의에 참석하여 당사의 의견을 전달하였음 &lt;참석&gt; - 장소 : 통합물류협회 회의실 (종로구 인사동) - 국토부 : 김배성(물류정책과장), 전형필(물류정책관), 고용노동부, - 협의회 : 서성길 회장 (CJ대한통운 2명, 한진 1명 참석)</p>	

항목	일자	주요 내용		
택배사업본부장 면담	2020.11.2	택배연대노조의 갑작스런 파업투쟁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노조측과의 협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였음 <본사와의 합의사항>		
		구분	합의사항	비고
		노조 추가수수료 지급건	- 11/4일 진천터미널 상량식 행사시 본부장님이 직접 배경설명 - 2021년 수수료체계 재조정 관련 일정 발표	
		하차비 지원	- 집배센타, 자가분류장 포함 모든 하차비 부과 면제 & 비용지원 - 연간 70억(대리점 부담액 25억원 포함)	
		가족식사권 지급	- 대리점장, 사무직, 택배사원 포함한 전체 구성원에 식사권 지급 - 총 3억 (1인당 2만 5천원 수준의 롯데리아 상품권) - 지급일자 : 11월 둘째주	
		분류인력 지원	- 터미널 및 집배센타에 총 1천명 수준의 분류인력 지원 - 연간 50억	
		영업지원책 강화	- 유실된 홈쇼핑 직택배 업체에 대한 영업지원방안 추진 - 기존거래처의 지속 유지를 위한 재계약 조건 완화	
		블로그 마케팅 실시	-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고객응대 및 홍보 강화 - 협의회가 중점 추진하고 비용은 전액 본사에서 지원	
		화물사고처리 간소화	- 쟁의기간중 발생한 화물사고 처리 간소화 방안 마련	

항목	일자	주요 내용																								
<p><b>중부권 Mega Hub 상량식 참석</b></p>	<p>2020.11.4</p>	<p>2022년 1월 정상가동을 목표로 진행중인 중부권 Mega Hub 터미널의 신축공사 상량식 행사 및 택배사업본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회가 개최되어 협의회 대부분의 임원진이 참석하여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음</p> <p><b>&lt;중부권 Mega Hub 터미널 개요&gt;</b></p> <table border="1" data-bbox="663 419 2089 667">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위치</td> <td>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산단로 250</td> <td>대지면적</td> <td>142,824m<sup>2</sup> (43,204평)</td> </tr> <tr> <td>공사기간</td> <td>2019.6~2020.3</td> <td>건축면적</td> <td>69,640m<sup>2</sup> (21,066평, 건폐율 48.76%)</td> </tr> <tr> <td>건축용도</td> <td>창고시설</td> <td>연면적</td> <td>166,999m<sup>2</sup> (50,517평, 용적율 79.77%)</td> </tr> <tr> <td>규모</td> <td>지상 4층</td> <td>주차대수</td> <td>845대</td> </tr> <tr> <td>하차접안</td> <td>2층 84대</td> <td>상차접안</td> <td>210개</td> </tr> </tbody> </table>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위치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산단로 250	대지면적	142,824m <sup>2</sup> (43,204평)	공사기간	2019.6~2020.3	건축면적	69,640m <sup>2</sup> (21,066평, 건폐율 48.76%)	건축용도	창고시설	연면적	166,999m <sup>2</sup> (50,517평, 용적율 79.77%)	규모	지상 4층	주차대수	845대	하차접안	2층 84대	상차접안	210개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위치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산단로 250	대지면적	142,824m <sup>2</sup> (43,204평)																							
공사기간	2019.6~2020.3	건축면적	69,640m <sup>2</sup> (21,066평, 건폐율 48.76%)																							
건축용도	창고시설	연면적	166,999m <sup>2</sup> (50,517평, 용적율 79.77%)																							
규모	지상 4층	주차대수	845대																							
하차접안	2층 84대	상차접안	210개																							

항목	일자	주요 내용
<p><b>용인지점 간담회 개최</b></p>	<p>2020.11.9</p>	<p>파업을 주도한 택배연대노조 가입 택배사원을 제외한 비노조 대리점장 및 택배사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 회장, 상임부회장, 비상임부회장, 수도권동부 부회장, 일반 회원사, 택배사원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항목	일자	주요 내용
<p><b>울산지점 간담회 개최</b></p>	<p>2020.11.11</p>	<p>대표이사님과 함께 울산지점을 방문하여 관내 대리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 참석자 : 대표이사님, 택배사업본부장님, 울산지점장</li> <li>- 협의회 참석자 : 회장, 상임부회장, 영남부회장, 울산이사, 관내 대리점장 등</li> </ul> 

항목	일자	주요 내용
영남지역순회	2020 12.3 ~ 5	<p><b>1. 김해올하대리점 점장 면담</b></p> <div data-bbox="663 312 1361 87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일시 : 2020. 12.3 오전 9시</p> <p>- 참석자 : 회장, 상임부회장, 영남부회장, 총무국장, 김해(대) 허철현 이사, 부산만덕(대) 한규태 이사, 서김해(대) 이종현 점장, 사무국장</p> <p>택배연대노조 김해지회 창립 및 활동에 따라 직접 해당 대리점을 방문하여 대리점의 열악한 분류환경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노조 지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음</p> </div> <div data-bbox="1386 338 2092 847" data-label="Image"> </div> <p><b>2. 부산권 지점장 간담회</b></p> <div data-bbox="663 951 2092 113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부산지역 협의회 회원사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협의 및 지점의 업무 협조 지원을 요청하였음</p> <p>- 일시 : 2020. 12.3 오전 12시</p> <p>- 참석자 : 회장, 박정오 감사, 오염석 상임부회장, 한점호 영남부회장, 문병희 총무국장, 사무국장, 김해(대) 허철현 이사, 부산만덕(대) 한규태 이사, 부산기장(대) 안창호 이사, 부산반송(대) 김민수 이사 등</p> <p>- 지점 : 부산서부지점 양경우 수석, 부산중부지점 황대필 대리, 부산동부지점 김종학 대리 등</p> </div> <p><b>3. 포항지점방문 및 지점장 간담회</b></p> <div data-bbox="663 1219 2092 140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포항지역 협의회 회원사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협의 및 지점의 업무 협조 지원을 요청하였음</p> <p>- 일시 : 2020. 12.3 오후 5시</p> <p>- 참석자 : 회장, 오염석 상임부회장, 한점호 영남부회장, 문병희 총무국장, 부산기장(대) 안창호 이사, 포항복구(대) 김은기 이사</p> <p>- 지점 : 포항지점 이동재 책임</p> </div>

항목	일자	주요 내용
<p><b>영남지역순회</b></p>	<p>2020 12.3 ~ 5</p>	<p><b>4. 회원사 방문</b></p> <p>협의회의 오랜 회원사였고 포항이사를 역임하셨던 영일만(대) 이수건 점장이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벌써 7년 동안이나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자리보전중에 있기에 위로차 방문하였으며, 현재 생계 유지 차원에서 다른 대리점 두곳의 관리자로 근무하고 계신 사모님께 십시일반 모은 위로금을 전달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0. 12. 4 오전</li> <li>- 참석자 : 회장, 오영석 부회장, 한점호 부회장, 문병희 총무국장, 부산기장(대) 안창호 이사, 포항북구(대) 김은기 이사</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항목	일자	주요 내용
<p>영남지역순회</p>	<p>2020 12.3 ~ 5</p>	<p><b>5. 동대구지점 방문 및 지점장 간담회</b></p> <p>동대구지역 협의회 회원사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협의 및 지점의 업무 협조 지원을 요청하였음</p> <p>- 일시 : 2020. 12. 5 오전  - 참석자 : 회장, 오염석 상임부회장, 한점호 영남부회장, 대구대흥(대) 김강석 이사, 범어(대) 김관식 이사  - 지점 : 동대구지점 김성현 수석</p> 

항목	일자	주요 내용
근로복지공단 간담회	2021.1.15	<p><b>[2021년 특고직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에 대한 설명회 참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 협의회장, 사무국장</li> <li>- 장소 : 통합물류협회 회의실</li> </ul> <p><b>&lt;산재보험법 내용 발췌&gt;</b></p> <p><b>1. 개정 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12월 산재보험법을 개정. 공포하였으며 <b>2021.1.5일부터 적용</b>됨</li> <li>- 그동안 특고직은 적용제외 신청 권유, 보험료 부담 등으로 산재 가입율이 낮았으나 2021.1월부터 특별신고기간 운영 및 보험료 면제, <b>2021.7월부터 적용제외사유 제한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b> 추진</li> </ul> <p><b>2. 주요 개정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특고직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b>법령이 정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가능</b>해짐</li> <li>- 소득발생과 상관없이 <b>표준소득금액 220만원</b> 적용</li> <li>- 대리점 택배사원 <b>퇴직시 반드시 이직자 신고</b>를 해야만 보험료 부과 안됨</li> </ul> <p>※ 배우자와 같이 경제공동체인 경우 알바나 무보수로 일한다 해도 특고직 불인정 (단, 4대 보험을 가입한 급여자인 경우 일반 근로자에 해당)</p> <p><b>&lt;고용보험법 내용 발췌&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시행 : 2021.7.1일부</li> <li>- 산재보험과 달리 노무제공자의 전속성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li> <li>- 구직급여 수급은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가입기간이 <b>최소 12개월 이상</b>이어야 적용</li> </ul>

항목	일자	주요 내용
국회의원 간담회	2021.1.28	<p><b>[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과과의 표준계약서 관련 간담회 참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 협의회장, 사무국장, 각 택배사(CJ대한통운, 한진, 로젠) 대리점 연합회 회장 및 사무국장</li> <li>-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27호 민병덕 의원 사무실</li> </ul> <p><b>&lt;주요 협의 내용 발췌&gt;</b></p> <p><b>1. 택배비 인상 필요</b>  현재 발생중인 모든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택배 단가가 너무 낮아서 생기는 문제로 최소 3천원 이상은 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배운임 고시제의 조기 도입 필요</li> <li>※ 현재 국회에서 택배운임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중</li> </ul> <p><b>2. 대리점(영업점)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b>  택배사들이 취급소, 영업소, 대리점, 집배점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교묘히 법망을 피해 운영중이며, 아직 법적으로 실체가 없는 우리 대리점들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점법 적용 필요</li> </ul> <p><b>3. 책임 집배송구역에 대한 법적인 권리 부여</b>  현재 부여받은 대리점 관할지역은 배송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집하 영업권에 대한 권리는 없는 상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나 다른 대리점을 통한 영업권 침해 사례가 빈번한 상황임</li> </ul> <p><b>4. 택배사원의 계약기간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b>  계약기간중 임에도 일하다 말고 임의로 위수탁 계약을 파기하는 택배사원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지위만을 인정해서 생기는 문제임</li> <li>- 사업자간의 계약인 만큼 이에 합당한 계약서 보완이 필요함</li> </ul> <p><b>5. 택배사원 지입계약 증거금의 유지</b>  고객의 화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이에 <b>합당한 수준의 계약 증거금은 유지되어야</b> 한다고 봄</p>

항목	일자	주요 내용
<p><b>4사 대리점연합회 공동 기자회견</b></p>	<p>2021.2.4</p>	<p>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작성시 대리점을 배제한 채 합의문을 작성한 것에 대하여 4개사 택배대리점연합회가 모여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합의문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입장문을 발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 참석자 : 회장, 사무국장</li> <li>- 기타 참석자 : CJ대한통운, 한진, 로젠 등 3사의 연합회장 및 사무국장, 대리점장 등 다수 참석</li> </ul>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항목	일자	주요 내용
<p><b>SBS 인터뷰</b></p>	<p>2021.2.18</p>	<p>택배사원의 과로사의 한 요인으로 추정되는 택배 저단가 문제에 대해 SBS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처의 택배사 경쟁유발을 통한 저단가 정책</li> <li>- 거래처 백마진 실태</li> <li>- 택배 최저운임 고시제를 통한 택배운임의 정상화 필요성을 피력하였음</li> </ul>  <p>© 저단가 택배 경쟁 관련 sbs 뉴스 인터뷰</p>

항목	일자	주요 내용
<p><b>화물인수인계비용 분담금 협약식</b></p>	<p>2021.2.26</p>	<p>택배사원의 배송화물 인수인계를 위한 분류인력 투입관련하여 그동안 협의회에서는 배송박스당 10원의 분담금을 내는것으로 본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전체 개설 대리점 968개중(2월말 현재) 828개(85.5%)의 대리점이 동의를 해주셨기에 화물인수인계 비용 분담에 대한 MOU 체결식을 진행하였음</p> <p>&lt;참석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 : 서성길 협의회장, 오염석 상임부회장, 권기태 강원부회장, 한점호 영남부회장, 김정기 사무국장</li> <li>- 본사 : 안대준 본부장, 장기룡 상무</li> </ul> 

항목	일자	주요 내용
<p><b>포천 화재사고 회원사 지원</b></p>	<p>2021.4.20</p>	<p>4월 5일 새벽 전기누전으로 인해 발생한 포천집배센타내 창고 화재사고로 인해 창고 8동이 소실되는 큰 피해가 발생되어 창고에 입주해있던 회원사 3곳의 사무실이 전소되었기에 <b>업무용 컴퓨터 1세트씩을 지원</b>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사명 : 동두천(대), 양주북부(대), 양주만송(대) 등</li> <li>- 지원내역 : 업무용 컴퓨터 + 모니터(27인치) + 기타 주변기기(키보드, 마우스 등)</li> <li>- 지원금액 : 총 204만원</li> </ul> <p>※ 상조회 운영위원회를 통한 지원은 추후 별도 진행예정임</p>

<p><b>호남지부 순회</b></p>	<p>2021.5.13 ~14(2일)</p>	<p>본사 주무부서 팀장들과 함께 호남지역을 방문해 본사의 업무정책 설명 및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 : 협의회장, 상임 부회장 등 2명</li> <li>- 본사 : 대리점협력팀 변재오 팀장, 택배기획팀 이용감 팀장 등 2명</li> </ul> <p><b>&lt;5월 13일 주요 행사일정&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주지점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 호남부회장 , 오상현 전주이사 , 김강배 군산이사, 전주지점장, 군산지점장, 회원사 일부</li> </ul> </li> <li>2. 광주지점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 호남부회장, 문용호 감사, 김동욱 광주이사, 김정현 충청호남특화이사, 광주지점장, 회원사 일부</li> </ul> </li> </ol> <p><b>&lt;5월 14일 주요 행사일정&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포지점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 호남부회장, 문용호 감사, 서영화 목포이사, 목포지점장, 회원사 일부</li> </ul> </li> <li>2. 회원사 대리점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도대리점</li> </ul> </li> </ol>
-----------------------	------------------------------	---

# 감사 업무 보고

(2020. 8 ~ 2021. 4)

<광주신창(대) 문용호 감사, 부산동구(대) 박정오 감사>

## 1. 협의회비

### 롯데백화점전국대리점협의회 제12기 1차 결산보고서

(2020년 8월 ~ 2021년 4월)

(단위 : 원, 부가세포함)

항 목	합 계	월 별 결 산 내 역												비고
		2020.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b>수입</b>	<b>224,358,161</b>	<b>43,951,457</b>	<b>22,339,000</b>	<b>22,809,000</b>	<b>22,705,000</b>	<b>21,862,704</b>	<b>22,575,000</b>	<b>22,275,000</b>	<b>23,308,000</b>	<b>22,533,000</b>	-	-	-	-
협의회비 수입내역	224,358,161	43,951,457	22,339,000	22,809,000	22,705,000	21,862,704	22,575,000	22,275,000	23,308,000	22,533,000	-	-	-	-
1) 전 월 이 월	23,136,457	23,136,457												
2) 협의 회 비	115,160,000	12,140,000	12,500,000	12,640,000	12,740,000	12,760,000	12,940,000	13,000,000	13,240,000	13,200,000				
3) 상조회지원금	82,015,000	8,675,000	9,145,000	9,115,000	9,075,000	9,095,000	9,135,000	9,275,000	9,265,000	9,235,000				
4) 총 회 적 금	-	-	-	-	-	-	-	-	-	-				
5) 기타 잡수익	4,046,704		694,000	1,054,000	890,000	7,704	500,000		803,000	98,000				
<b>지출</b>	<b>188,371,940</b>	<b>18,402,900</b>	<b>19,966,900</b>	<b>21,678,320</b>	<b>29,932,560</b>	<b>16,982,950</b>	<b>21,885,000</b>	<b>19,166,500</b>	<b>22,625,210</b>	<b>17,731,600</b>	-	-	-	-
1. 직 원 급 여	12,000,000	1,000,000	1,300,000	1,600,000	1,300,000	1,300,000	1,6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	-	-	-
1) 사무국장	12,000,000	1,000,000	1,300,000	1,600,000	1,300,000	1,300,000	1,6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2) 여 직 원	-	-	-	-	-	-	-	-	-	-				
2. 사무국 운영 경비	12,529,000	2,281,000	1,281,000	1,281,000	1,281,000	1,281,000	1,281,000	1,281,000	1,281,000	1,281,000	-	-	-	-
1) 운영 경비	5,500,000	1,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 임 대 료	7,029,000	781,000	781,000	781,000	781,000	781,000	781,000	781,000	781,000	781,000				
3) 직원 4대보험료	-	-	-	-	-	-	-	-	-	-				
4) 직원 퇴직적립금	-	-	-	-	-	-	-	-	-	-				
3. 지 역 회 비	43,960,000	4,570,000	4,750,000	4,820,000	4,870,000	4,880,000	4,970,000	5,000,000	5,000,000	5,100,000				
4. 경 조 사 비	11,980,000	1,280,000	300,000	4,060,000	1,160,000	600,000	1,100,000	1,380,000	1,800,000	300,000				
5. 회 장 단 활 동 경 비	58,666,880	6,625,000	5,386,500	8,009,300	8,043,500	6,415,900	5,034,000	6,205,500	8,236,580	4,710,600	-	-	-	-
1) 회 장 활 동 비	18,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 국 장 활 동 비	8,1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3) 부회장 활동비	13,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4) 회장단 교통비	5,700,000	950,000		1,250,000	2,100,000	1,100,000			300,000					
5) 출 장 교 통 비	2,254,200	1,150,000		88,800	979,500		14,000	21,900						
6) 선거관리위원회	-	-	-	-	-	-	-	-	-	-				
7) 업무추진비	11,112,680	125,000	986,500	2,270,500	564,000	915,900	620,000	1,783,600	3,536,580	310,600				
6. 회 의 비 용	10,111,520	517,000	319,500	1,908,020	4,298,000	111,000	1,300,000	-	1,658,000	-	-	-	-	-
1) 전국 이사회	4,684,000				3,384,000		1,300,000							
2) 회 장 단 회 의	3,364,020	517,000		773,020	567,000	111,000			1,396,000					
3) 기타 임시 회의	2,063,500		319,500	1,135,000	347,000				262,000					
7. 행 사 개 최 비 용	18,000,000	-	-	-	8,000,000	2,000,000	-	4,000,000	2,000,000	2,000,000	-	-	-	-
1) 한마음단합대회	-	-	-	-	-	-	-	-	-	-				
2) 정기총회 개최비	-	-	-	-	-	-	-	-	-	-				
3) 정기총회 적금	18,000,000				8,000,000	2,000,000		4,000,000	2,000,000	2,000,000				
8. 예 비 비	21,124,540	2,129,900	6,629,900	-	980,060	395,050	6,600,000	-	1,349,630	3,040,000	-	-	-	-
1) 여직원 급여	-	-	-	-	-	-	-	-	-	-				
2) 직원 4대보험료	-	-	-	-	-	-	-	-	-	-				
3) 직원퇴직 적립금	-	-	-	-	-	-	-	-	-	-				
4) 기타 예비비	21,124,540	2,129,900	6,629,900		980,060	395,050	6,600,000		1,349,630	3,040,000				
<b>지출총계</b>	<b>188,371,940</b>	<b>18,402,900</b>	<b>19,966,900</b>	<b>21,678,320</b>	<b>29,932,560</b>	<b>16,982,950</b>	<b>21,885,000</b>	<b>19,166,500</b>	<b>22,625,210</b>	<b>17,731,600</b>	-	-	-	-
<b>현금잔액</b>	<b>35,986,221</b>	<b>25,548,557</b>	<b>27,920,657</b>	<b>29,051,337</b>	<b>21,823,777</b>	<b>26,703,531</b>	<b>27,393,531</b>	<b>30,502,031</b>	<b>31,184,821</b>	<b>35,986,221</b>	<b>35,986,221</b>	<b>35,986,221</b>	<b>35,986,221</b>	<b>35,986,221</b>

# 감사 업무 보고

## 2. 사무국 운영비

### 롯데백화점전국대리점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결산보고서

(2020년 8월 ~ 2021년 4월)

(단위 : 원)

항 목	합 계	월 별 결 산 내 역												
		2020.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수입	1. 운영비 수입내역	8,874,237	4,844,940	529,065	500,000	500,000	500,155	500,000	500,000	500,077	500,000	0	0	0
	1) 전 월 이 월	1,344,940	1,344,940											
	2) 사무국 운영비	5,500,000	1,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3) 기 타	2,029,297	2,000,000	29,065			155			77				
지출	1. 복 리 후 생 비	1,122,200	420,000	419,800	52,000	27,340	40,660		53,820	44,190	64,390			
	2. 여 비 교 통 비	1,916,134	991,000	66,400	188,800	342,100	125,100	145,800	56,934	-	-	0	0	0
	1) 시 내 교 통 비	73,200				33,200	40,000							
	2) 출 장 비	1,842,934	991,000	66,400	188,800	308,900	85,100	145,800	56,934		-			
	3. 통 신 비	1,043,290	242,410	106,080	98,300	96,790	95,330	96,180	106,350	102,950	98,900	0	0	0
	1) 전 신 전 화 요 금	429,290	51,910	50,580	48,300	46,790	45,330	46,180	48,350	47,950	43,900			
	2) 인 터 넷 전 화 요 금	4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3) 택 배 요 금	164,000	140,500	5,500				-	8,000	5,000	5,000			
	4. 정 수 기 임 대 료	132,200			17,200	29,000	17,200	17,200	17,200	17,200	17,200			
	5. 사 무 국 공 과 금	1,311,720	87,930	132,930	89,290	140,350	162,050	227,180	198,040	164,430	109,520			
6. 기 타 예 비 비	2,914,700	1,695,500	337,850	8,770	123,490	107,900	190,100	103,050	223,500	124,540				
합 계	8,440,244	3,436,840	1,063,060	454,360	759,070	548,240	676,460	535,394	552,270	414,550	0	0	0	
현 금 잔 액	433,993	1,408,100	874,105	919,745	660,675	612,590	436,130	400,736	348,543	433,993	433,993	433,993	433,993	

협의회비 결산서

롯데백화점국대리점협의회 제12기 1차 결산집계표

(2020년 8월 ~ 2021년 4월)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예 산	금 액
1) 전 월 이 월	23,136,457	1. 직 원 급 여	12,700,000	12,000,000
2) 협 의 회 비	115,160,000	1) 사무국장	12,700,000	12,000,000
3) 상 조 회 지 원 금	82,015,000	2) 여 직 원		-
4) 총 회 적 금	-	2. 사무국 운영비	20,529,000	12,529,000
5) 기타 잡수익	4,046,704	1) 운 영 비	13,500,000	5,500,000
		2) 임 대 료	7,029,000	7,029,000
		3) 직 원 4대 보험료	-	-
		4) 직 원 퇴 직 적 립 금	-	-
		3. 지 역 회 비	63,900,000	43,960,000
		4. 경 조 사 비	11,700,000	11,980,000
		5. 회 장 단 활 동 경 비	39,450,000	58,666,880
		1) 회 장 활 동 비	18,000,000	18,000,000
		2) 국 장 활 동 비	8,100,000	8,100,000
		3) 부 회 장 활 동 비	-	13,500,000
		4) 회 장 단 교 통 비	6,150,000	5,700,000
		5) 출 장 교 통 비	7,200,000	2,254,200
		6) 선 거 관 리 위 원 회	-	-
		7) 업 무 추 진 비	-	11,112,680
		6. 회 의 비 용	11,380,000	10,111,520
		1) 전 국 이 사 회 의	7,600,000	4,684,000
		2) 회 장 단 회 의	1,890,000	3,364,020
		3) 기 타 임 사 회 의	1,890,000	2,063,500
		7. 행 사 개 최 비 용	18,000,000	18,000,000
		1) 한 마 음 단 합 대 회	-	-
		2) 정 기 총 회 개 최 비	-	-
		3) 정 기 총 회 적 금	18,000,000	18,000,000
		8. 예 비 비	24,480,892	21,124,540
		1) 여 직 원 급 여	20,800,000	-
		2) 직 원 4대 보 험 료	2,157,813	-
		3) 직 원 퇴 직 적 립 금	1,523,079	-
		4) 기 타 예 비 비		21,124,540
합 계	224,358,161	합 계	202,139,892	188,371,940
결산 잔액		35,986,221		

사무국 운영비 결산서

사무국 운영비 결산집계표

(2020년 8월 ~ 2021년 4월)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예 산	금 액
(전 기 이 월)	1,344,940	1. 복 리 후 생 비	1,160,000	1,122,200
1) 사무국 운영비	5,500,000	2. 여 비 교 통 비	1,650,000	1,916,134
2) 기 타	2,029,297	1) 시 내 교 통 비	200,000	73,200
		2) 출 장 비	1,450,000	1,842,934
		3. 통 신 비	1,210,000	1,043,290
		1) 전 신 전 화 요 금	450,000	429,290
		2) 인 터 넷 서 비 스 요 금	450,000	450,000
		3) 팩 배 요 금	310,000	164,000
		4. 정 수 기 임 대 료	209,300	132,200
		5. 사 무 국 공 과 금	940,000	1,311,720
		6. 기 타 예 비 비	2,279,520	2,914,700
합 계	8,874,237	합 계	7,448,820	8,440,244
결산 잔액		433,993		

업무감사 결과 보고서

감사 소견서

작성자	감사 문 용 호 (서명)	감사 박 정 오 (서명)
-----	---------------	---------------

- 업무적으로는 서성길 회장님이라 상임 부회장님, 사무총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고 있고 굉장한 활동을 하신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모든 회장님들이 만족할만한 선과는 거리가 없었지만  
각은 성과라고 거둘수 있어 다행입니다.
- 앞으로는 칭찬을 많이 하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감사 소견서

작성자	감사 문 용 호 (서명)	감사 박 정 오 (서명)
-----	---------------	---------------

회계 업무를 충실하게 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회계 수리 및 영수증은 살펴볼까?  
회계수리나 영수증이 1건은 제외 하고 5년분까지  
말주머니에 있었습니. 영수증이 있는것도, 제라  
바꾸는 있습니다.  
착금(입금)으로, 반년이상 된때까지 귀감시서진  
(프로젝트에 관련된 경우) 매의의 착금충상은  
개심 레세로 할수있요.  
정금 상환이라는 개념 있을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하고를 합니다.

## 협의회 운영 관련

### 1. 회원사 가입현황 1) 지부별 가입현황

####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회원 현황표

(2021년 5월 12일)

거창				
구분	수도권서부	강원	호남	의류특화
개설 대리점	241	40	111	56
가입 회원사	110	40	90	47
미가입 대리점	131	-	21	9
가입율	45.6%	100.0%	81.1%	83.9%

구분	수도권동부	충청	영남	총 계
개설 대리점	207	108	223	986
가입 회원사	89	71	202	649
미가입 대리점	118	37	21	337
가입율	43.0%	65.7%	90.6%	65.8%

### <협의회 회원현황 변동추이>

제11기 (2018.07)		
개설	가입	가입율
906	399	44.0%

제11기 1년 (2019.06)		
개설	가입	가입율
914	574	62.8%

제11기 2년 (2020.6)		
개설	가입	가입율
910	591	64.9%

제12기 출범 (2020. 8)		
개설	가입	가입율
959	636	66.3%

제12기 9개월 (2021. 5)		
개설	가입	가입율
986	649	65.8%

2) 지점별 가입현황

### 지점별 협의회 회원사 가입현황

(2021년 5월 12일)

구 분		회원사 가입			가입율(%)	비고	구 분		회원사 가입			가입율(%)	비고
		개설	회원	비회원					개설	회원	비회원		
수도권서부	군포지점	38	19	19	50.0%		호남	군산지점	15	8	7	53.3%	
	서울구로지점	28	6	22	21.4%			전주지점	21	14	7	66.7%	
	인천지점	41	38	3	92.7%			광주지점	26	25	1	96.2%	
	부천시점	36	21	15	58.3%			순천시점	17	16	1	94.1%	
	서울서부지점	23	3	20	13.0%			목포지점	15	11	4	73.3%	
	일산지점	32	5	27	15.6%			제주지점	17	16	1	94.1%	
	수원지점	33	16	17	48.5%			<b>지부 소계</b>	<b>111</b>	<b>90</b>	<b>21</b>	<b>81.1%</b>	
	평택지점	10	2	8	20.0%								
수도권동부	서울북부지점	56	15	41	26.8%		영남	동대구지점	31	31	-	100.0%	
	서울중로지점	37	10	27	27.0%			서대구지점	19	18	1	94.7%	
	서울남부지점	40	25	15	62.5%			포항지점	14	13	1	92.9%	
	서울동부지점	39	19	20	48.7%			구미지점	16	15	1	93.8%	
	용인지점	22	14	8	63.6%			안동지점	12	12	-	100.0%	
	이천시점	13	6	7	46.2%			부산동부지점	21	19	2	90.5%	
	<b>지부 소계</b>	<b>207</b>	<b>89</b>	<b>118</b>	<b>43.0%</b>			부산중부지점	22	19	3	86.4%	
강원	강원지점	원주	16	16	-	100.0%	창원지점	창원	31	30	1	96.8%	
		춘천	11	11	-	100.0%		진주	18	16	2	88.9%	
		강릉	13	13	-	100.0%		<b>지부 소계</b>	<b>223</b>	<b>202</b>	<b>21</b>	<b>90.6%</b>	
	<b>지부 소계</b>	<b>40</b>	<b>40</b>	<b>-</b>	<b>100.0%</b>								
충청	청주지점	34	29	5	85.3%	의류특화	수도권서부특화	18	16	2	88.9%		
	대전지점	45	29	16	64.4%		수도권동부특화	10	9	1	90.0%		
	천안지점	23	9	14	39.1%		충청호남특화	14	14	-	100.0%		
	당진지점	6	4	2	66.7%		영남특화	14	8	6	57.1%		
	<b>지부 소계</b>	<b>108</b>	<b>71</b>	<b>37</b>	<b>65.7%</b>		<b>지부 소계</b>	<b>56</b>	<b>47</b>	<b>9</b>	<b>83.9%</b>		
						<b>총 계</b>		<b>986</b>	<b>649</b>	<b>337</b>	<b>65.8%</b>		

## 2. 협의회 홈페이지 리뉴얼

### 1) 신규 홈페이지 제작완료 및 오픈

- 오픈일자 : 2021. 1. 22일

주소	신규 홈페이지 메뉴 구성
<p><a href="https://롯데택배협의회.com">https:// 롯데택배협의회.com</a></p>	<p>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Lotte Express Association.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association's logo and name, and several menu items: '협의회 소개', '게시판', '자료실', '공동구매', and '대리점회원'. On the right side of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links for '로그아웃', '정보변경', '마이페이지관리', and '팝업공지관리'.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anner for '공동구매' (Joint Purchase) with the text '상조회 회원 전용' (Shareholder exclusive) and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Quality products at low prices!). Below the banner is a '바로가기' (Go) button.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row of six red icons with corresponding labels: '협의회 소개', '업체 계약 문의', '택배 예약/조회', '공동구매', '협의회 APP', and '협의회 활동'.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there is a vertical sidebar menu with sections: '회원' (Member) containing '공지사항' (Notice) and '회원진연락망' (Member contact); '협의회' (Association) containing '협의회공지사항' (Association notice), '자유게시판' (Free board), '협의회비   지역회비' (Association fee   Regional fee), '활동보고서' (Activity report), and '협의회투표' (Association vote); '상조회' (Shareholder) containing '상조회공지사항' (Shareholder notice), '자유게시판' (Free board), '상조회비' (Shareholder fee), and '운영위원회 회의록' (Board of Directors meeting minutes); and '임원' (Board of Directors) containing '임원 공지사항' (Board of Directors notice), '정책 협의실' (Policy consultation room), and '임원투표' (Board of Directors vote).</p>

## 2. 협의회 홈페이지 리뉴얼

### 2) 방문자수

신규 오픈일 1월 22일 이후 총 방문자수 : 1,291명 (1일 평균 13.2명)

※ 각 부회장님 및 지역이사님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또 관내 회원사에도 안내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3) 공동구매 현황

(단위:원, 부가세 포함)

구분	품명		판매수량	금액	비고
(주)페어	라벨프린터기	PP-480E	32대	4,160,000	1월 ~4월 (4개월간)
	블루투스 스캐너	S2	39대	6,435,000	
선엔터프라이즈	라벨운송장		386박스	31,838,400	
상조회	운송장 정리함		60개	360,000	
합계				42,793,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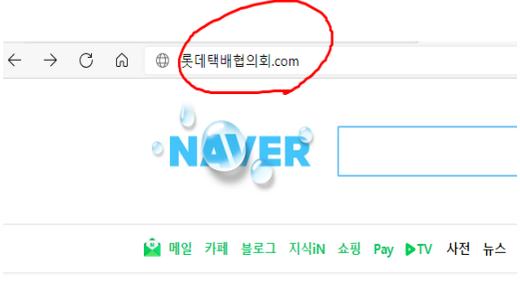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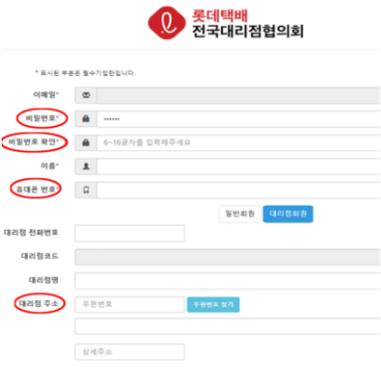
#### - 공동구매로 인한 수익금 현황

※ 매월 25일경 전월의 판매대금 업체 지급후 발전기금은 협의회비 통장으로 입금중

구분	품목		2021.1	2021.2	2021.3	2021.4	비고
(주)페어	라벨프린터기	휴대용	본사 프로그램 개발중 (6월중 오픈 예정)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 비용으로 상계
		사무실, 업체용	1대	1대	4대	26대	
	블루투스 스캐너	9대	6대	11대	13대		
선엔터프라이즈	라벨운송장		34Box	122Box	98Box	181Box	포장 Box당/W1,000원
미정	포장박스 Tape		판매 보류중				포장 Box당/W500원
상조회	운송장 보관함		5개	5개	15개	35개	
	근무복(조끼, 우비 외)		필요시(회원사 요청시) 추진				
	기타 택배용품						
합계							

## 2. 협의회 홈페이지 리뉴얼

### ※ 홈페이지 이용 방법 안내

① 홈페이지 접속	② 앱 다운로드(스마트폰)	③ 초기 홈화면에 아이콘 설치
<p>- 네이버 주소창(검색창 X)에서 "롯데택배협의회.com" 입력</p> 	<p>하단의 협의회 APP 클릭시 다운로드 진행</p>  <p>APP 자동설치</p>	 <p>길게 클릭시 홈화면에 추가문구 클릭시 설치</p>
④ 로그인	⑤ 정보 변경	⑥ 정보 이용 제한
 <p>1.아이디는 5자리의 대리점코드이며 초기 비밀번호는 123456입니다.</p>	 <p>3. 대리점 정보 (휴대폰번호, 주소 등)이 올바르게 기재되어있는지 확인, 변경 후 비밀번호를 꼭! 변경해주세요.</p> <p>변경된 정보는 공동구매, 명절 선물 발송 등에 이용되므로</p>	<p>※ 로그인 : 10일까지 유지</p> <p>&lt;임원&gt; 모든 정보 이용 가능</p> <p>&lt;회원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 회원 : 협의회 게시판 이용 가능</li> <li>- 상조회 회원 : 상조회 게시판 이용 가능 (공동 구매 가능)</li> </ul> <p>&lt;비회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 소개 및 자유게시판 이용 가능</li> </ul>

### 3. 택배업 관련 동향보고

#### 1) 사회적 합의기구 택배비 분과위원회

- 물량확보를 위한 택배시장의 **저단가 과당경쟁 해소**를 통한 **적정 택배요금체계** 구축
- 업체들의 **백마진 근절**로 **공정한 거래구조** 토대 마련

#### ■ 불공정 거래 및 계약 관행

- (일부 화주의 백마진 관행) 건당 약 600원 내외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11.12),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안전자료, p.9.

#### < 온라인 쇼핑물 기업화주 백마진 구조 사례 >



### 택배 운임(요금) 적정화

추진 전략	과제	기대효과
01 택배 운임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피/무게/거리 등을 고려한 <b>택배 요금체계 개선안 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일본) 특별적합화물운임: 박스별 부피와 무게에 수송거리를 고려하여 결정</li> </ul> </li> <li>• 택배서비스부문 <b>참고원가 가이드라인</b>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현행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확대 적용 방안 검토</li> <li>&gt;(일본) '트럭운송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가능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적정 운송비용 지불을 권고하기 위한 원가계산 및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li> </ul> </li> <li>• 택배 운임 구조 분석 및 평가를 통한 <b>적정 운임 설계</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치에 합당한 <b>적정 요금 수준 달성</b></li> <li>• 택배 운임 구조 투명화</li> </ul>
02 택배서비스 가격(요금)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배화물 운임 등 <b>택배서비스 요금제도</b>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일본) 특별적합화물운임, 사후신고제, 표준적 운임제 등</li> </ul> </li> <li>• 거래구조 상 일부 발생하는 리베이트성 일명 <b>'백 마진' 제제 강화</b></li> <li>• 택배서비스 가격(요금) 결정을 위한 <b>사회적 합의기구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택배 운임(요금) 인상 및 인하, 적정한 수익배분 수준 결정 등이 주요 안건</li> <li>&gt;원가 계산 및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포</li> </ul> </li> <li>• 서비스 및 요금 수준 등 실태파악을 위한 <b>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배서비스 종사자 일자리의 질적 개선</li> <li>• 택배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여력 확보</li> <li>•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산업 경쟁력 강화</li> </ul>

### 3. 택배업 관련 동향보고

#### 2) 사회적 합의기구 택배비 분과위원회

국토부는 예하 산업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통해 기본적으로 택배사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물량을 줄여주는 대신 택배사원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택배비 원가 구조 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 (1) 택배단가 변화 추세

연도(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매출액 (조원)	2.3	2.7	3.0	3.3	3.5	3.7	4.0	4.3	4.7	5.2	5.7	6.3
처리량 (억박스)	8.9	10.8	12.0	13.0	14.1	15.1	16.2	18.2	20.5	23.2	25.4	27.8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 추이(회) : ('08) 22.4 → ('12) 33.6 → ('19) 62.5  
 \*박스당 평균 택배 단가 추이(원) : ('08) 2,609 → ('12) 2,506 → ('19) 2,269  
 \*자료출처 : 스마트 생활물류 신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한국교통연구원, 2019.5.)  
 참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안 검토보고, 2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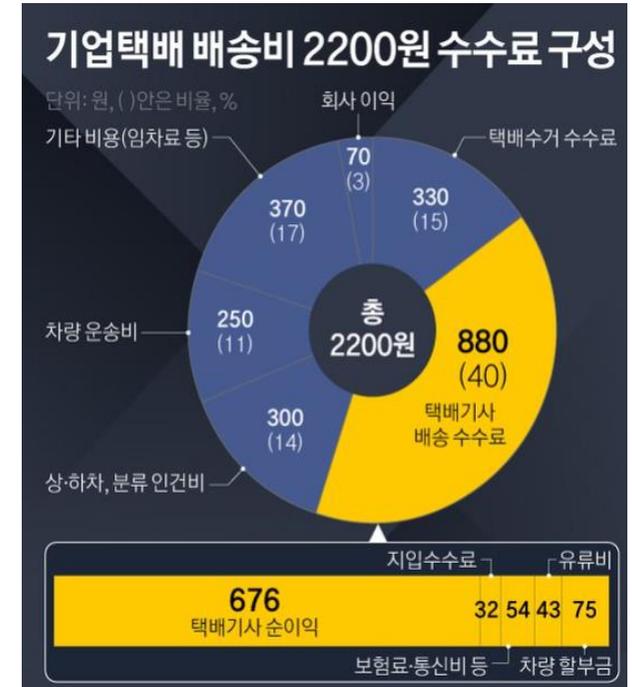
#### (2) 택배단가의 주요 하락원인

- 2004년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개정되면서 **택배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짐**
- 택배업체간의 물량확보를 위한 **경쟁 입찰 심화** 및 업체들의 저단가 과다경쟁 유도
- 업체들의 **백마진 요구 증가**로 인한 실제 적용 택배단가의 하락

#### (3) 택배단가 인상 사유

- 택배사는 **분류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부담**과 향후 분류자동화 및 도심권내 집배센터 구축 등을 통한 **분류환경개선을 위한 자금 확보**
- 대리점 :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 택배사원 : 현재 대비 적은 배송물량 처리 및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과로사 방지와 수익 보전**
- **주5일제 도입**을 위한 대체 인력 수급 등의 추가 인건비 필요

※ 산업연구원 연구 용역 결과 택배비 인상 제안 : **박스당 260원 ~ 340원 수준**(기업택배 기준)



### 3. 택배업 관련 동향보고

#### 3) 노조 관련

##### (1) 택배연대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12월 전국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 등 두개의 노조가 통합되었으며 올해 1월 통합 지도부 선거를 통해 제2기의 지도부를 구성하였음.

구분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비고
제1기	김태완	진경호	김인봉	
제2기	진경호	김태완		

- 조합원수 : 약 6,400명 정도 (전체 택배노동자 5만 5천명의 11.6% 수준)

※ 단체교섭을 통한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 : 약 2천명 수준

- 롯데택배 : 약 60여개의 대리점 소속 550명 정도가 가입증임 (롯데 1만명의 약 5.5% 수준)

##### (2) 화물연대 택배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으로 택배보다는 화물운송(컨테이너 등) 등이 주력임

구분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택배지부장	비고
제9기	이봉주	김태영	박성기	

- 조합원수 : 약 750명 정도 (전체 택배노동자 5만명의 1.5% 수준)

- 롯데택배 : 울산지역 13개 대리점에서 약 55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음

##### (3) 전국연대노조

민주노총의 과격한 노동운동 방식에 반발한 한국노총에서 작년 10월 택배본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지부 및 지회 결성에 나서고 있음

구분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비고
제1기	김동명	강신표	이동호	

- 조합원수 : 전국 8개 지회 약 400명 정도 (전체 택배노동자 5만명의 0.8% 수준)

- 롯데택배 : 은평지회 출범 (2021.4.12), 30명 정도가 가입증임

※ 동해, 동해북평, 김천, 안성 등(한진, CJ 대리점)에서 전체 택배노동자의 과반을 차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단체 교섭권 확보

#### <향후 전망>

택배연대노조와 전국연대노조간의 노조원 가입 유치를 통해 서로 교섭권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4. 고용, 산재보험 적용관련

### 2021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

#### 보험가입대상의 변화



#### 변화와 예상추이

- 특고직의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의 확대
- 특고직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 산재의무적용 범위의 증가
- 산재 신청과 미가입 재해 문제 다수 발생 가능
-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액 증가
- 고용보험 미관리로 과태료 및 보험료 징수 위험

#### 4. 고용, 산재보험 적용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리의 어려움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신설되는 법 개정 내용의 적시습득어려움                 </div>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고용·산재보험신고관련과태료 등</th> </tr> </thead> <tbody> <tr> <td>300만원이하 과태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관계 성립 또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보험료징수법제1조제1항)</li> <li>피보험자취득 및 상실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고용보험법제15조제1항)</li> </ul> </td> </tr> <tr> <td>200만원이하 과태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압이 적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산재보험법제12조제3항)</li> </ul> </td> </tr> <tr> <td>지급된보상금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의 추징수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관계성립신고 또는 산재보험료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동안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지급된 보상금 일부를 징수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li> </ul> </td> </tr> </tbody> </table>	고용·산재보험신고관련과태료 등		300만원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관계 성립 또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보험료징수법제1조제1항)</li> <li>피보험자취득 및 상실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고용보험법제15조제1항)</li> </ul>	200만원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압이 적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산재보험법제12조제3항)</li> </ul>	지급된보상금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의 추징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관계성립신고 또는 산재보험료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동안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지급된 보상금 일부를 징수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li> </ul>
고용·산재보험신고관련과태료 등									
300만원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관계 성립 또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보험료징수법제1조제1항)</li> <li>피보험자취득 및 상실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고용보험법제15조제1항)</li> </ul>								
200만원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압이 적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산재보험법제12조제3항)</li> </ul>								
지급된보상금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의 추징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관계성립신고 또는 산재보험료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동안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지급된 보상금 일부를 징수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잦은 입·이직 신고로 인한 관리상 피로감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산재/고용보험대상직종 차이 혼동                 </div>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보험법상 정의되는 특고 대상직종 및 보수체계치로 추가보험료 지급 가능성</th> </tr> </thead> <tbody> <tr> <td>산재보험료산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보험료 = 월보수액 * 산재보험료율**</li> <li>* 월보수액: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고시된 직종별 보수액</li> <li>**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 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li> </ul> </td> </tr> <tr> <td>고용보험료산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와 '기타소득제2' 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고용보험료를 적용</li> <li>월보험료 = 월보수액 * 고용보험료율(0.7%)</li> <li>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li> </ul> </td> </tr> </tbody> </table>	보험법상 정의되는 특고 대상직종 및 보수체계치로 추가보험료 지급 가능성		산재보험료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보험료 = 월보수액 * 산재보험료율**</li> <li>* 월보수액: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고시된 직종별 보수액</li> <li>**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 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li> </ul>	고용보험료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와 '기타소득제2' 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고용보험료를 적용</li> <li>월보험료 = 월보수액 * 고용보험료율(0.7%)</li> <li>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li> </ul>		
보험법상 정의되는 특고 대상직종 및 보수체계치로 추가보험료 지급 가능성									
산재보험료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보험료 = 월보수액 * 산재보험료율**</li> <li>* 월보수액: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고시된 직종별 보수액</li> <li>**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 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li> </ul>								
고용보험료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와 '기타소득제2' 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고용보험료를 적용</li> <li>월보험료 = 월보수액 * 고용보험료율(0.7%)</li> <li>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산정의 복잡성                 </div>									



예상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대리점마다 관리방식에 차별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li> <li>대리점, 택배기사의 민원사항 발생시 전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이 정립되지 못하여 형평의 문제 발생가능성 높음</li> <li>국가사회보험의 방향인식, 적용 및 대응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li> </ul> <p>→ 발생될 수 있는 전사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p>

#### 4-1. 산재보험 의무가입

##### <특고직 직종별 산재보험 적용>

제도시행일	해당직종
2008.7.1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건설기계 자차기사(2019.1.1)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2012.5.1	<b>택배기사</b>
	전속 퀵서비스 기사
2016.7.1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 기사
2020.7.1	방문 강사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등)

##### <2021년 특고직 산재보험 의무적용>

###### 1) 산재보험 가입현황 (2021. 4월말 기준)

- 전체 택배서비스산업 종사자의 현재 가입률은 약 65% 수준  
(미가입자중 대부분은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
- 롯데택배 가입률 : 53% 수준 (이중 적용제외신청 12%, 임의 미가입 47%)
- ※ 반드시 6월말 이전에 전체 가입을 해야함

###### 2) 산재보험 의무가입 적용 (2021. 7. 1일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라 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기하고자 2020년 12월 산재보험법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2021.1.5일부로 시행 적용중임

- 노무제공자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두 적용  
(알바, 분류작업원, 상하차 작업원 등 모두 적용 대상)
- 2021.1월 5일부터 특별신고기간 운영 및 보험료 면제  
(이전 미신고분 + 사업장 페널티 면제, 2021년 100%, 2022년 50%)
- 2021.7월 부터 적용제외사유 제한 (법령으로 정한 사유만 1개월 휴업 인정)
- 7월 이전 적용제외 신청자도 7월부터는 정상 가입으로 강제 전환됨  
(필요시 7월 이후 적용제외 재신청)
- 적용기준 : 소득 발생 여부와 상관없음 : 표준소득 적용 (택배 220만원)
- ※ 2021년 택배업 산재보험율 : 1.9%  
(보험료 총액 ₩41,800원의 50% ₩20,900원씩 공동 부담)
- ※ 퇴직자 발생시 : 반드시 이직자 신고를 해야만 제외됨(중요)

## 4-1. 산재보험 의무가입

### 2021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제도 변경 내용



#### 1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가 개선되어 2021. 7. 1.부터는 질병·육아 등으로 인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신청 가능한 경우  
(2021. 7. 1. 이후)

-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중전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2021년 7월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이미 적용제외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위의 사유로 적용제외를 원하는 경우 새롭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산재보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 다음과 같이 특별 자진신고 기간 내 최초 입직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공포일) 이전의 산재보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구분	공포일~'21.12.31.까지 자진신고	'22.1.1.~'22.12.31.까지 자진신고
면제비율	100% 면제	50% 면제

- 신고기간에 따라 보험료 면제율이 달라지므로 빨리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 3 산재보험제도의 특징점

- 산재보험은 ①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보상되고 ②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으며 ③ 장해·유족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구분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과실여부	과실 있어도 보상	차등(과실비율)	차등(약관)
재요양	○	X	X
합병증 예방관리	○	X	X
장해연금	○	X	X
유족연금	○	X	X
직업훈련 등 지원	○	X	X

구분	산재보험료		
보험료	<b>월 보수액(고시액) X 산재보험료율</b> (2021년 택배업 산재보험료율 : 1.9%)		
	- 택배기사의 보수 고시임금 : 월 220만원 (일 평균 임금 : ₩73,333원 적용) - 2021년 산재보험료 : ₩41,800		
	구분	대리점	특고직
	각 50%	₩20,900	₩20,900
절감 방안	- 산재보험료를 적용 실태 분석 - 사업장 일반요율 / 개별실적 요율의 비교분석 - 가능한 낮은 수준의 요율 적용 유도		

## 4-1. 산재보험 의무가입

### 3) 산재보험 의무가입 관련 본사입장

본사는 2021년 하반기 부터 대리점 계약시(재계약 포함) 산재보험을 위수탁대리점 계약 조건으로 적용하겠다 함

### 4) 산재보험 가입 절차

#### (1)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접수

- 신고기한 : 고용일로 부터 14일 이내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근로자고용신고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 근로자 사용여부 (해당 X) )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알뜰)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의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X"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신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상호(법인명)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근로자수	
	성명	
	주소	
보험가입 신청내용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등급 (            ) 원
	업무 내용	
	근로시간	부터            까지
	특정업무 종사여부	[ ] 분직직업을 수행하는 업무    [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 연(납) 업무    [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특정업무 종사경력	최초 종사연월            년    월 종사한 기간의 합계            년    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비전속 택배서비스기사 또는 택배서비스업자 [필수 확인 사항]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 ] 예    [ ] 아니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택배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뒷면 전속성 확인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신청인(보험가입자) [ ] 보험사무대행기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 적용제외신청서 **※** 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 사업 장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성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특수 형태 근로 종사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4-1. 산재보험 의무가입

### 5) 산재보험 인하 적용방법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근로시간 단축 등)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의 **산재보험료 요율을 인하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 (1) 재해예방활동

구분	내역	비고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이를 제거, 감소 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실행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이수 후 자체적으로 산재예방활동을 수립	

(2) 적용대상 : 상시 근로자 수의 합 50명 미만인 경우

#### (3) 적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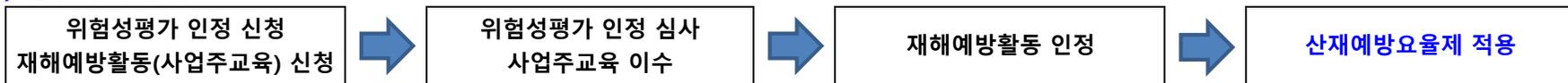
구분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처리기관
인하율	산재보험요율 20% 인하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 안전보건공단 : 재해예방활동 인정 여부 결정 - 근로복지공단 : 산재예방요율 결정 및 보험료 징수 - 고용노동부 :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여부 결정
유효기간	3년	1년	
방법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이 속한 다음년도부터 인하적용 (중복시 인하율이 높은 것만 적용)		

#### (4) 신청방법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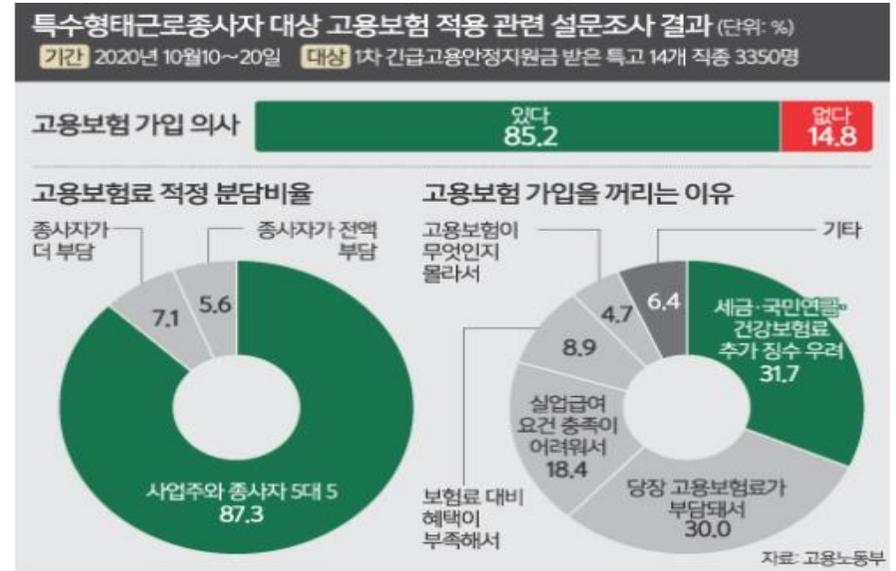
- 위험성평가 인정 :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같음 (온라인 신청도 가능)

#### (5) 업무처리 절차



## 4-2. 고용보험 적용

### 1)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 추진배경



## 4-2. 고용보험 적용

### 2)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 (2021. 7. 1일부)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분류됨

- 산재보험과 달리 **전속성에 관계없이 노무제공자 모두 적용**
-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 구직급여 수급조건 :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적용기준 : **실제 보수총액**(사업+기타 소득) - 비과세 소득 및 경비  
(경비 인정 : 1년차 최대 80%, 2년차 이후 최대 30%까지 인정)
- 신규 입직자 등 소득확인과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 : **기준보수 133만원 적용**
-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보수가 **80만원 이상**시 의무적용  
(구직급여 하한액 : 기준 보수 133만원의 60%인 798,000원)

구분	고용보험(실업급여)료
보험료	실제 월 보수액 X 고용보험료율 (2021년 : 1.4%, 사업자 0.7% + 특고직 0.7%)
절감 방안	- 고용보험료 최소화 대책 마련 필요 (보수 축소 신고 등)

### <기타 사항>

- 특고직의 업무 특성상 투잡이 많아 여러 회사에서 일해도 고용보험 가입 허용 예정 (추후 세부 시행령으로 확정) : 이중 취득 가능
- 보험료 상한액 적용 : 보험 가입자 평균액의 10배 이내
- 택배사원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자발적 이직을 제외**하며 **소득 감소로 인한 경우는 예외 인정** : 이직 신고일부터 4주 이후 지급  
(이직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or 이직 1년간의 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실업급여 : 기초 일액(일급)의 60%, **상한액 66,000원**
- 현재 1년주기 신고 --> **매월 신고시 할인 적용추진**(입법발의 3/30 민주당 박홍근의원)/ 소득 지급자(대리점)이 신고



**추후 퇴직금과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고용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사유 : 실업급여 증가로 인한 기금적자 증가. 올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3조2천억원 대출, 이자만 1,330억원 규모)

### <보험료 절세 방안>

택배사원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최소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됨

### 4-3. 산업안전 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축약>

##### 제5조 사업주 의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유지, 증진

#####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 발생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12조 안전, 보건표지의 부착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문

##### 제23조 안전조치

- 기계, 설비에 의한 위험 등
- 운송, 조작, 운반,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시 위험
- 추락위험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표시

##### 제24조 보건조치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 제31조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선임 및 교육
- 관리책임자 교육

##### 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

유해, 위험 작업이 필요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함

#####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유해 물질 취급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경고표지 부착 등

##### 작업환경측정

소음, 분자 화학적 인자 등 유해인자 노출 작업장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측정실시

##### 제43조 건강진단

모든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사무직 2년 1회, 현장 근로자 1년 1회)

- 산업안전중요성강화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처벌수위 상승 →  
택배업무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후 그에 합당한 후속조치 必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형법
처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정 규모 이하의 대표이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자연인 처벌 수위	(사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可) (사망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1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 외)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	-

- 노무제공자의 안전관리조치 및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 지원
- 사고/사망 등 발생시 보상 로드맵을 제공하여 회사측 리스크 최소화

## 5. 협의회 법인화 추진案

11기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해 온 협의회의 법인화 추진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준비작업과 진행이 있었으며 금일 그 첫발을 내딛는 창립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 법인 설립 : 협동조합 형태 (**협동조합 롯데택배대리점협의회**)
- 업무 위탁 : **오원희 행정사사무소** (서울 중구 소재)
- 설립 절차

단계별	절차	세부 내역	세부일정	비고
제1단계	발기인 명부 작성	협의회 회장단 11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추진(회장, 부회장8, 감사2)		
제2단계	정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목적</li> <li>-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li> <li>-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li> <li>-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li> <li>-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li> <li>- 적립금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li> <li>-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li> <li>-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li> <li>-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해산에 관한 사항</li> <li>-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li> </ul>	~4.20일	
	사업계획서 작성	- 예산 확보 및 추진사업별 지출 세부내역 작성		
제3단계	설립동의자 모집	협의회 임원진 68명을 설립 동의자(회원)로 등록		
제3단계	주무관청 사전검토	- 중구청, 중소기업청 두곳에 서류심사 사전검토 요청	04월 28일	
제3단계		- 서류 수정 보완 --> 수정신고	04월 30일	
제4단계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 감사 선임 등 (과반 출석, 출석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05월 15일	
제5단계	설립 인가	- 주 사업소 관할 행정기관장의 설립인가 (서류 날인 제출)	5월말	
제6단계	출자금 납입	- 회비 잔액 및 월납입 회비로 충당	6월중	
제7단계	법인설립 등기	- 설립인가 후 6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		

## 6. 협동조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 1) 노무 관련 업무지원체계 구축

#### <1안> 노무법인과의 MOU 체결

-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 매뉴얼 필요
- 대리점에서 산재, 고용, 노사 등의 문제로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포기하는 것을 예방
- 현장 택배사원들의 민원 최소화
- 노무 문제(노조, 산재보험, 고용 보험 등)를 전담할 수 있는 **노무법인과의 업무협약 체결**

#### ※ 기대효과

- 전담 콜센터 운영으로 신속 대응 가능
- 교섭 창구 일원화 및 행정업무 대리를 통한 비용절감 및 운영 효율화 기대
- 상시 관리를 통한 업무의 신속, 편리 및 전반적인 관리 가능



#### (1) 예상 추정비용 및 업체현황

(단위:원, VAT포함)

구분	기준액	월간 예산(견적가)	검토 업체명	비고
노무		450만원	노무법인 더원 인사노무컨설팅	- 1회 출장시 / 30만원
산재 고용 산업안전	1인당 / 3천원	3,000만원 (택배사원 1만명 적용시)		- 입직 및 변경 신고 대행 - 적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인하 조정 - 전담팀 구성을 통한 상시 대응 가능

#### (2) 비용 총당방안

- 노무 비용 :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액 인하조정 및 본사와 비용분담 협의 (**본사 50% + 협의회 50%**)
- 산재, 고용, 산업안전 비용

\* 실제 도입시 비용 부분에 대한 협의 필요 : 협의회 자체 해결 불가로 **대리점 부과** 또는 **전액 본사지원 필요**

\* **대리점 부과시** : 대리점별 택배사원 인원 수에 따른 기준액 적용 (사업자 + 택배사원의 분담 여부는 대리점별 자체 협의)

## 6. 협동조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 1) 노무 관련 업무지원체계 구축

#### (3) 운영 방안 (업체 제안내역)

##### < 인사, 노무 >

(단위:원, VAT포함)

구분	운영형태	전담 인원배치		비용		비고
		오전	오후	월간	년간	
인사, 노무	<b>콜센터</b>	<b>2명</b>	<b>2명</b>	450만원	5,400만원	

- 인사, 노무 관련 상시 (09:00 ~ 18:00) 전용 상담전화 2회선 및 상담인력 배치
- 유선 전화 이외에도 카톡, 이메일, 문자 수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 가능
- 택배사원 계약서 이외 수수료 정산방식, 관련 양식 등 제공
- 교섭 관련 서류 품 제공 및 교섭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실시
- 실제 교섭 대행시 실비 추가 정산 (출장 비용에 대한 협의 필요)

##### < 산재, 고용보험, 산업안전 >

(단위:원, VAT포함)

구분	운영형태	전담 인원배치		비용		비고
		노무사	전담 직원	월간	년간	
산재보험 외	<b>전담팀 구성</b>	<b>6명</b>	<b>6명</b>	3,000만원	3억6천만원	1만명/3,000원

- 상시 (09:00 ~ 18:00) 전용 상담전화 및 상담인력 배치
- 유선 전화 이외에도 카톡, 이메일, 문자 수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 가능
- 입직 신고 및 퇴직자(이직)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 6월 이내 대리점별 기준 자료 취합 후 관리 프로그램 로직생성 예정 : 신고 대행 등의 관리방안 협의

## 6. 협동조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 <2안> 노무사 직접 고용

- 경력있는 노무사를 직접 고용하여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노무 문제를 직접 컨트롤하는 방안 (CJ대한통운 사례 - 퇴직 노무사 직접 고용)
- 노무업무 경험이 있거나 or 전담할 직원 고용 후 업무 보조
- 노무 문제 전담 대응 매뉴얼 제작 및 지역별 순회 교육 실시
- 산재보험, 고용보험 관련 신고방법, 절차 안내 및 각 대리점 상황에 맞는 사례별 대응방안 마련

### ※ 기대효과

- 협의회 전속 노무사 보유로 관련 지원업무의 전문성 제고
- 외부 MOU를 통한 위탁업무 대비 비용절감 및 운영 효율화 기대
- 대리점에 대한 상시 업무지원 및 상담 가능

### <예상 추정비용>

구분	채용 인원	급여	기타 복지지원	연봉	비고
노무사	1명	450만원	100만원	5,500만원	- 기타 복지 (명절 2회, 하계 휴가비 지급)
전담 직원	1명	300만원	100만원	3,700만원	- 4대보험 포함

※ 2020년 공인노무사의 평균 연봉 수준 : 약 5,284만원 정도 (상위 8,000만원)

### <비용충당 방안>

현재의 협의회비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노무관련 업무의 아웃소싱 형태로 본사의 지원을 받는 방안**이 최선으로 판단됨

## 6. 협동조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 2) 관련 교육 추진

- 대리점 회원사 및 구성원들의 교육자료 제작 및 업무 진행을 담당할 **교육 전담직원 채용**
- 택배업 종사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각종 교육자료 자체 제작
- 노무, 서비스 마인드 고취, 세무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세부 계획>

구분	교육주기	교육 내용	주관	비고
인사, 노무 교육	월 1회 (필요시 수시)	노동법, 인사, 노사관계 등	노무사	서비스 아카데미 교육 활용 (매월 셋째주 월요일 - 구로TML)
산재,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주요 실무내용 교육 등		
세무 교육		세법 안내, 세금신고, 절세방법 등	세무사	
서비스 교육		대리점 및 택배사원의 역할과 마인드 고취	교육업체 초빙	

### 3) 배송안정화를 위한 배송조직 운영방안

특정 소수의 택배사원을 계약 형태로 유지하다 대리점의 인력 공백 또는 문제발생시 바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으로 대리점 택배사원들의 집단 이탈이나 노조 쟁의, 기타 특수한 상황발생시 배송 네트워크의 안정화를 위해 문제발생 지역에 전환 배치하여 해소하는 방안

- 예상 인원 : 서울 및 수도권 30명

- 운영 방안 : 수도권內 이형화물 전담반 운영

- 선배치 검토 지역 : 동남권터미널 (노조 활성화 지역)
- 평시 터미널에 배치하여 이형화물 전담반 형태로 운영
- 네트워크 문제발생시 이형화물은 원래대로 일반 대리점으로 돌려 배송하고 해당 배송조직 인원은 문제 지역에 투입하는 방안
- 택배사원 수수료 : 기본급 150만원 + 배송Box 당 ₩1,500원 수준 (일 100Box 정도 처리)
- 물량 통제 : 본사와 협의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취급제한 화물에 대한 물량 파악 후 적정수량만 전담 처리

※ 추후 광역시, 대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 추진

### 4) 다양한 복리후생사업 추진

- 고가의 택배용 (배번호) 차량보험에 대한 대안 마련 검토 : 우선 보험회사와 협의 후 불가시 상조회와 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포함 검토
- 택배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택배용품에 대한 공동구매 추진 : 협의회 홈페이지 공동구매 활용

## 7. 필요 경비 추산

### 1) 신규 직원채용 인건비

(단위:원)

구분	채용 인원	급여	기타 복지지원	연봉	비고
노무사	1명	450만원	100만원	5,500만원	- 기타 복지 (명절 2회, 하계 휴가비 지급) - 4대 보험 포함
노무전담 직원	1명	300만원	100만원	3,700만원	
교육 지원	교육 기획 유경험자	300만원	100만원	3,700만원	

### 2) 교육비용

(단위:원)

구분	교육대상	교육주기	교육 형태	회차당 인원	비고
노무, 산재, 고용 세무	대리점 점장	월 1회	집체 교육	50명 이내	구로TML 교육장 사용
서비스 교육			사무직 및 택배사원	집체 교육	
		수시	방문 교육	각 지점별	필요시

### <교육비용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노무, 산재, 고용보험 교육		세무 교육		서비스 교육		비고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초빙 강사			300,000	3,600,000	1,200,000	14,400,000		
교육장 임대					1,000,000	12,000,000	수도권:구로, 지방: 임대	
교육자료 제작/인쇄	500,000	6,000,000	500,000	6,000,000	1,000,000	12,000,000	교육자료 제작+인쇄 :1만원	
식음료대	500,000	6,000,000	500,000	6,000,000	1,000,000	12,000,000	참석자 식음료 : 1만원	
비용 소계	1,000,000	12,000,000	1,300,000	15,600,000	4,200,000	50,400,000		
합계						6,500,000	78,000,000	

## 7. 필요 경비 추산

### 3) 배송조직 운영

- 전담 배송 물량 및 배송수수료 현황

(단위:원 VAT포함)

구분	기준		배송추가	배송수수료								비고
	규격	단가		Aa1	Aa2	Ab1	Ab2	Ba1	Ba2	Bb1	Bb2	
규격 외	26~28kg	7,700	15%	1,800	1,820	1,840	1,860	1,830	1,850	1,870	1,890	
	161~180cm			2,955	2,975	2,995	3,015	2,985	3,005	3,025	3,045	
29~30kg	9,900	2,010		2,030	2,050	2,070	2,040	2,060	2,080	2,100		
181~200cm		3,495		3,515	3,535	3,555	3,525	3,545	3,565	3,585		
최장변	최장변 120cm초과 세변의합 160cm이하	5,500	12%	1,420	1,440	1,460	1,480	1,450	1,470	1,490	1,510	
결박	결박중 25kg이하 세변의합 160cm이하			2,080	2,100	2,120	2,140	2,110	2,130	2,150	2,170	

#### <예상 수수료 현황>

(산출조건 : Aa1급지 배송수수료 X 배송갯수 X 월 22.5일 근무)

(단위:원 VAT포함)

구분	배송수량별 수수료 추정			
	일 70개	일 85개	일 100개	
평균 단가	5,500	3,276,000	3,978,000	4,680,000
	7,700	4,654,125	5,651,438	6,648,750
	9,900	5,504,625	6,684,188	7,863,750
기본급		배송수수료	수량액	비고
금액별	150만원	4,680,000	6,180,000	
	200만원	4,680,000	6,680,000	

#### < 30명 운영시 수지현황>

- 전담취급 물량 선정시 단가대 결정 필요 ex) 5천원 이상, 6천원 이상 등
- 단가에 따른 급지별 배송수수료 이외 추가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  
ex) 1,500원 지급 (차액 580원 - 협의회 별도 수입)

단가	기본급	일 100개	수수료 합계	차액	비고
5,500	100만원	3,375,000	4,375,000	305,000	
	150만원	3,375,000	4,875,000	- 195,000	
	200만원	3,375,000	5,375,000	- 695,000	
	250만원	3,375,000	5,875,000	- 1,195,000	
	300만원	3,375,000	6,375,000	- 1,695,000	

※ 기본급 150만원 지급시 월간 585만원, 연간 7,020만원 손실 발생

## 7. 필요 경비 추산

### 4) 사무국 확장 이전 검토

#### <사무국 이전>

(단위:원)

구분	현재	변경	비고
위치	서부역(중구 만리동1가)	현위치 인근	
임대면적	20평 (전용 15평)	35평(전용 25평)	15평 증가
임대보증금	1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증가
월 임대료	66만원	250만원	190만원 증가
관리비	12만원	50만원	39만원 증가
합계	1천만원/ 월 78만원	3천만원/ 월 300만원	

#### <이사 비용 및 비품 확충>

(단위:원)

구분	단위	금액	세부내역	비고
이사 비용	이사비용	1,000,000	포장이사	
	도색 및 바닥	2,500,000	이전 사무실 공사	
비품 확충	사무용 책상/의자	3 Set	600,000	
	업무용 컴퓨터	3 Set	2,400,000	본체 +모니터
	복사기	1대	100,000	렌탈
	회의용 탁자 + 의자		1,000,000	회의실
	파티션 외		500,000	
	기타		500,000	소모품 외
합계		8,600,000		

## 7. 필요 경비 추산

### 5) 총 소요비용 추산

(단위:원)

항목별		소요 예산		비용 증당 방안			비고			
		월간	연간	공동구매	협의회	차액				
이사비	임대보증금		20,000,000	4,800,000	-	343,000,000				
	임대료 및 관리비	2,500,000	30,000,000							
	이사비		3,500,000							
	비품 확충		5,100,000							
	소계	2,500,000	58,600,000							
운영비	인건비	노무사	4,500,000							
		노무 담당	3,000,000				37,000,000			
		교육 담당	3,000,000				37,000,000			
	사무실 운영비	1,000,000	12,000,000							
	교육비	노무 외	1,000,000				12,000,000			
		세무	1,300,000	15,600,000						
		서비스	4,200,000	50,400,000						
	배송지원조직 운영	5,850,000	70,200,000							
	소계	23,850,000	289,200,000							
	총계	26,350,000	347,800,000							

※ 구성원에 대한 위탁 교육업무 + 노무업무 아웃소싱 등의 상생기금 명목으로 본사에서 최소 연간 4억 정도의 지원 필요

## 8. 생활물류 택배서비스 협회 설립 추진 관련

택배서비스산업 현장에서 투자와 인력운영, 집배송에 이르기까지 실제 증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택배 대리점들의 법적인 지위 획득과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여 2019년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생물법의 입법 무산으로 인해 실제 활동을 못하였음. 그러나 작년 12월 생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금년 7월부터 법이 발효되게 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조직구성 개입 및 참여가 필요해보임

### 1) 사단법인의 설립추진의 의의

#### (1) 설립 목적

-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대리점과 택배사원 등)의 공통된 이익 대변 (국토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국가 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조율 등을 대표하여 진행)
-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 모두의 공동이익을 도모
-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 및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사업 경영자(대리점)과 종사자(택배사원 등)의 관련 교육 훈련
-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및 관리 감독
- 종사자의 복지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
-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로 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

#### (2) 국가, 지방 자치단체로 부터의 위탁사무 가능

현재 택배용 영업용 번호판 "배" 넘버와 관련하여 취득 및 유지를 위해서 용달협회와 통물협회 등 2개 단체에 각각 월 회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가 불투명하고 이중 부과에 따른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이를 통합하여 위탁 관리하는 방안

<비용 납부 현황>

구분		용달협회	통합물류협회	배번호 지급기준(1.5톤 미만의 소형화물자동차)	비고
회원가입	가입비	10만원 /1회		- 본인 소유(명의) 화물차량 보유 (신불자 등 본인 소유가 어려운 경우 공동명의 가능)	
	월회비	12,000원			
취업등록	경력관리비	5,000원 / 월	3,000원 / 월	- 택배와의 전속운송계약 체결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취득	
	자격증명발급	5만원 / 1건			

※ 취업등록 : 영업용 운전자가 실제 운전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화물복지카드(유가보조)와 화물운전보수교육 자료로 활용

- 취업등록 미이행자 : 과태료 50만원 + 과징금 10만원 + 운행정지 10일

※ 위탁 업무 수행시 : 2.5만대 \* 3천원 = 월간 7천5백만원 (업무통합 / 중복비용 미부과/ "배"번호 관련 하위 세부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경우)

## 8. 생활물류 택배서비스 협회 설립 추진 관련

### 2) 2019년 추진내역 경과 보고

- 창립총회 개최 : 2019년 8월 31일 (대전 유성구 소재 계룡스파텔) / CJ와 롯데만 참여
- 초대 이사장 선출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김종철 회장 (대외업무 담당)
- 이사 선출 : CJ 3명 + 롯데 3명 (서성길 회장, 이재홍 기획국장, 송길섭 전임 회장)
- 상임 이사 선출 : 송길섭 전임 회장 (대내업무 담당)
- 감사 선출 : CJ 이점순 부회장, 롯데 안중(대) 오준석 점장
- 법인 출연금 : CJ 대한통운 1,250만원 + 롯데 1,250만원 = 합 2,500만원 (법인 출연금 잔액 : 김종철 회장 명의의 통장에 보관중)
- ※ 사단법인 도메인 주소 사전 확보 (2019년) : [www.k2lca.or.kr](http://www.k2lca.or.kr) (Korea Living Logistics of Courier Service Asosation) / 사무국장 명의

### 3) 현재 상황

당시 생물법 법안통과가 안된 상황이었기에 사단법인 설립을 인가해줄 수 없다하여 국토부에서 신청서를 반려하였으나, 2020년 12월 생물법이 통과되고 법안이 7월에 발효됨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하여 재신청서 허가를 해주겠다는 의사확인으로 사단법인 창립을 재추진해옴 (단, 기간 경과에 따라 새로이 창립총회 등의 절차대로 진행 요청)

- 창립총회 재개최 추진 의사 합의 :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등 3개사
- 이사 선출 : CJ 4명, 롯데 3명, 한진 3명 등 총 10명 (이사장 포함), 감사 2명
- 법인 출연금 : CJ대한통운 2,500만원, 롯데/한진 1,250만원 출연 / 총 5,000만원
- 월 회비 규정 : 이사 수에 맞춰 회비를 비율로 부과, CJ 100만원, 롯데/한진 80만원 (개인 회원 - 1만원 별도 적용)

### 4) 임원진 구성현황

구분	초대 이사장	인원 구성				비고
		직책	CJ(5명)	롯데(4명)	한진(3명)	
임원 선출현황		이사				기타 별도의 사단법인 사무국 설치 or 전담 직원 채용 등에 대한 부분은 추후 결정
		감사				

# 본사 관련

## 1. 화물인수인계 비용(분류비) 분담 관련

### 1) 동의서 수령현황

#### 화물인수인계비용 분담금 동의서 수령현황

2021년 5월 10일 현재

지점별 지역역사 명단	연락처	대리점 동의서 수령현황									사무국 제출여부 제출 미제출	지점별 지역역사 명단	연락처	대리점 동의서 수령현황									사무국 제출여부 제출 미제출									
		개설			동의			미동의						개설			동의			미동의												
		소계	일반	의류	소계	일반	의류	소계	일반	의류				소계	일반	의류	소계	일반	의류	소계	일반	의류										
수도권 서부 지부	군포	안양호계(대) 허정준 안산공단(대) 추정호	010-2899-0441 010-2895-8254	41	38	3	35	32	3	6	6	-	35	-	강원	원주	원주동부(대) 전광표	010-5321-0017	16	16	-	16	16	-	-	-	-	16	-			
	서울구로	광명(대)	임현식	010-5351-6761	30	27	3	30	27	3	-	-	-	30	-	지부	춘천	춘천서부(대) 손현찬	010-5364-0680	11	11	-	11	11	-	-	-	-	11	-		
		인천	인천주안(대)	유진수	010-7157-5431	41	40	1	41	40	1	-	-	-	41	-	강릉	서강릉(대) 김병호	010-7436-3345	13	13	-	13	13	-	-	-	-	13	-		
	부천	김포구래(대)	심완섭	010-4169-4756	39	36	3	38	35	3	1	1	-	38	-	지부 합계			40	40	-	40	40	-	-	-	-	40	-			
		서울서부	강서방화(대)	이경진	010-7669-4458	24	23	1	18	17	1	6	6	-	18	-	군산	정읍(대)	김강배	010-3674-4666	17	15	2	17	15	2	-	-	-	-	17	-
	일산	수원	화성동탄2(대)	차현섭	010-8385-7077	33	32	1	32	31	1	1	1	-	32	-	전주	전주중앙(대)	오상현	010-2895-0580	23	21	2	23	21	2	-	-	-	-	23	-
			평택	송탄(대)	이승홍	010-2550-6259	37	33	4	33	30	3	4	3	1	33	-	광주	동영광(대)	김동욱	010-3578-1078	26	25	1	26	25	1	-	-	-	-	26
	지부 합계				257	239	18	239	222	17	18	17	1	239	-	목포	무안(대)	서영화	010-9390-4959	16	15	1	16	15	1	-	-	-	-	16	-	
	수도권 동부 지부	서울북부	남양주별내(대)	김영철	010-3811-7264	58	56	2	57	56	1	1	-	57	-	순천	순천중앙(대)	일동민	010-4148-9917	19	17	2	19	17	2	-	-	-	-	19	-	
		서울중로	포천북부(대)	박상영	010-8673-6997	35	33	2	33	32	1	2	1	1	33	-	제주	성산(대)	고희수	010-2693-0567	17	16	1	17	16	1	-	-	-	-	17	-
서울남부			철원동(대)	한상규	010-6734-4955	39	37	2	33	33	-	6	4	2	33	-	지부 합계			118	109	9	118	109	9	-	-	-	118	-		
서울동부		오포고산(대)	김달주	010-7237-3747	40	38	2	24	24	-	16	14	2	24	-	동대구	대구대흥(대)	김강석	010-2515-9737	32	31	1	32	31	1	-	-	-	-	32	-	
용인		광주도척(대)	양호걸	010-6449-6005	23	22	1	20	20	-	3	2	1	20	-	대구	대구범어(대)	김관식	010-9380-0782	19	19	-	19	19	-	-	-	-	-	19	-	
		이천	동이전(대)	장윤석	010-5584-4722	13	11	2	12	11	1	1	-	12	-	서대구	대구진천(대)	김현호	010-6574-8254	19	19	-	19	19	-	-	-	-	-	19	-	
지부 합계				208	197	11	179	176	3	29	21	8	179	-	포항	포항북구(대)	김은기	010-6621-4707	14	14	-	13	13	-	1	1	-	-	13	-		
충청 지부		청주	청주울량(대)	김정길	010-3322-9822	36	34	2	36	34	2	-	-	36	-	구미	동김천(대)	이승욱	010-8584-3440	17	16	1	16	15	1	-	1	-	-	16	-	
		대전	서세종(대)	임석근	010-5488-8878	46	44	2	46	44	2	-	-	46	-	안동	청송(대)	권지욱	010-2572-3174	12	12	-	12	12	-	-	-	-	-	12	-	
			계룡(대)	공지욱	010-3427-4117	24	23	1	17	16	1	7	7	-	17	-	부산동부	부산기장(대)	안창호	010-3834-7970	25	22	3	24	21	3	1	1	-	-	24	-
	천안	등천안(대)	성민호	010-3857-1399	6	6	-	6	6	-	-	-	6	-	부산중부	부산반송(대)	김민수	010-8714-0208	23	21	2	23	21	2	-	-	-	-	23	-		
	당진	당진송악(대)	원기영	010-5565-1071	112	107	5	105	100	5	7	7	-	105	-	부산서부	부산만덕(대)	한규태	010-3588-7160	23	21	2	22	20	2	1	1	-	-	22	-	
		지부 합계				112	107	5	105	100	5	7	7	-	105	-	울산	울산특화(대)	노주태	010-5573-4500	20	18	2	-	-	-	20	18	2	-	-	
	총 계				972	915	57	887	842	45	85	73	12	887	-	청원	동마산(대)	김노현	010-4254-6062	34	31	3	29	27	2	5	4	1	29	-		
																진주	청원북면(대)	서석오	010-8221-6462	18	18	-	16	16	-	2	2	-	-	16	-	
																지부 합계			237	223	14	206	195	11	31	28	3	206	-			
																총 계			972	915	57	887	842	45	85	73	12	887	-			

91.3%

91.3%

## 1. 화물인수인계 비용(분류비) 분담 관련

### 2) 분류비 적용

- 적용일자 : **2021. 3. 1일부**
- 적용금액 : 배송 Box당 W10원의 분류비를 대리점 지급수수료에서 원천 징수 후 본사분 W10원을 합해 **총 W20원 지급**
- 지급일자 : 4월부터 대리점 수수료 지급시 + 분류비 항목으로 지급
- 세금계산서 발생 : 본사 분담금 10원에 대해서만 발생중
- 지급대상 : **동의를서 제출한 대리점** (택배사원이 아닌 **대리점으로 직접 입금**)
- 미동의의 대리점 : 택배사원 12명당 1명 수준의 분류인력 투입 (비용은 본사 부담, 비동의의 대리점 **선택권 없음**)

### 3) 분류비 관련 Q&A

문) 아직 동의를서를 쓰지 않은 대리점은 어찌되는가?

답) 원안대로 12명당 1명 수준의 분류인력을 본사가 투입하고 동의를서 제출시 그 시점부터 20원의 비용으로 지급 예정임

문) 한진은 대리점 부담이 전혀 없고 모두 본사에서 부담하는데 왜 우리만 내는가?

답) 한진은 10명당 1명 수준의 분류인력을 투입중인데 이는 우리 비동의의 대리점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비교) CJ는 본사가 나눈 그룹에 따라 15원~20원의 분류비용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비용은 모두 대리점에서 부담중

문) 노조활동 지역으로 이미 본사에서 분류인원을 투입중인 경우는 어찌 하나?

- 답) 1. 동의를서를 제출한 경우 : 해당지역은 비동의로 처리  
2. 동의를서를 미제출한 경우 : 이미 인원으로 투입되었기에 비용지급 불가

문) 배사원에게 분류비 명목으로 꼭 지급을 해야만 하나?

답) 소속 택배사원들과 협의하여 다른 비용(상하차작업 인건비, 스캔작업 인건비 등)으로 대체 사용 가능

문) 대리점측의 분류비 10원 분담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답) 우선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분류비 관련 별도의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 상태 유지되며, 별도 대안이 없을 경우 올 4/4/분기 본사와 재협의 예정임  
※ 협의회와 함께 검토중인 집하 **택배운임증 일부를 기타운임으로 처리하는 경우 예외 적용 예정**

문) 향후 단가 인상이나 매출 증대 등으로 본사가 수익을 내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나?

답) **본사의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본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

## 2. 단가 가이드라인 조정 (2021. 3. 15 적용중)

### 1) 본사 공헌이익율

#### ■ 공헌이익율 Guide Line(신규 : 최저운임 기준, 재계약 : 청구기준 관리손익 실적 기준)

구 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	F그룹	G그룹
기준 공헌이익율	9%	8%	7%	6%	5%	4%	3%

※ 기존 대비 2% 수준 인하 조정

### 2) 개인택배 기준 운임 변경(대형취급점 제외)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동일권	타권	제주권	비 고
소 형	5,000	6,000	8,000	
중 형	6,000	7,000	9,000	
대 형	7,000	8,000	10,000	

- 점소별 C2C 코드는 별도 안내시까지 동일권/타권 운임 동일 적용 : 전산 일괄반영 예정
- 일반취급점 계약서 변경 재날인 필수 : 3. 15限

#### <협의회 개선의견>

-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택배를 5천원으로 인상하게 됨에 따른 타택배사로의 이탈 우려 (특히 지방권 특산물 영업 위축 우려)

#### ※ 개인택배 취급화물의 종류 및 규격별 단가 세분화

(단위:원 VAT포함)

구분	~110cm/5Kg 이하	~130cm/15Kg 이하	~160cm/25Kg 이하	비고
C2C(순수 개인택배)	5,000	6,000	7,000	
B2C(특산물 코드)	4,000	5,000	6,000	

## 2. 단가 가이드라인 조정

### 2) 개인택배 기준 운임 변경(대형취급점 제외)

<최종 협의안>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C2C 공통			C2C 특산물		
		동일권	타권	제주권	동일권	타권	제주권
소형	~110cm /5kg	5,000	6,000	8,000	4,000	5,000	7,000
중형	~130cm /15kg	6,000	7,000	9,000	5,000	6,000	8,000
대형	~160cm /25kg	7,000	8,000	10,000	6,000	7,000	9,000

- **아이스박스 동일 적용** 및 **타권 미적용**
- 특산물 정의 : 지리적, 자연적 환경에 의해 해당지역에서 **특별히 생산되는 화물**
- 특산물 단가 가이드라인 적용기준 : C2C 제값받기 시행 동의서에 동의한 대리점에 한하여 적용
- 적용시기 : **동의서 제출 다음달 1일부터**
- 코드승인 : 지점 안내

### 3) 제값받기 규격의 적용 유예 기준 변경

구분		기준	변경
세변합	박스, 아이스박스	1-5구간 (0-140cm)	-10cm
		6구간 이상 (140cm 초과)	-5cm
	그 외		-10cm
최장변		-3cm	좌동

- 기존 두개의 화물이 붙어 측정되거나
- 사진이 어두워 판독 불가의 경우 **자동 제외**

## 2. 단가 가이드라인 조정

### 3) 제값받기 규격의 적용 유예 기준 변경

#### <경쟁사 비교>

(단위 :원, VAT포함)

구분	금지 및 현착불 단가 기준		현재		변경후		비고
			집하수수료	특별수수료	집하수수료	특별수수료	
한진 (6/1일부)	A금지	3,500원 ~3,999원	31.5%	5.0%	26.5%	- (-5%)	당사 취급불가
		4,000원 ~ 4,999원	36.5%	10.0%	31.5%	5% (-5%)	33%
		5,000원 ~ 5,999원			36.5%	10.0%	36%
		6,000원 ~			39.5%	13% (+3%)	39%~
	3,500원 ~3,999원	33.5%			5.0%	28.5%	- (-5%)
	B금지	4,000원 ~ 4,999원	38.5%	10.0%	33.5%	5% (-5%)	
		5,000원 ~ 5,999원			38.5%	10.0%	
		6,000원 ~			41.5%	13% (+3%)	
		3,500원 ~3,999원			35.5%	5.0%	30.5%
	C금지	4,000원 ~ 4,999원	40.5%	10.0%	35.5%	5% (-5%)	
		5,000원 ~ 5,999원			40.5%	10.0%	
		6,000원 ~			43.5%	13% (+3%)	

※ 개인택배 운임 및 최저 등록운임 인상에 맞추어 특별수수료 지급 기준 조정

#### <적용일자>

- 현착불 신규 고객 : 2021. 6월부 적용
- 기존 고객 : 2022.6월부 일괄 적용

## 2. 단가 가이드라인 조정

### 4) 거래처 승인 가이드라인

#### 택배 거래처 승인 Guide Line(B2C 위탁기준, 박스포장 기준)

##### ■ 단가 Guide Line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세변합 무게	소형 적입	~80cm ~5kg	~100cm ~10kg	~120cm ~15kg	~140cm ~20kg	~160cm ~25kg	~180cm ~28kg	~200cm ~30kg
A그룹	1,750	1,900	2,150	2,500	3,100	4,000	9,000	12,000
B그룹	1,800	1,950	2,200	2,550				
C그룹	1,850	2,000	2,250	2,600				
D그룹	1,900	2,050	2,300	2,650				
E그룹	2,000	2,150	2,400	2,750				
F그룹	2,100	2,250	2,500	2,850				
G그룹	2,200	2,350	2,600	2,950				

※ 아이스박스 포장은 단가 가이드라인 + 200원 적용

##### <협의회 개선의견>

- 인상된 단가 가이드라인 보다 높은 단가로 거래중인 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상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의견 전달
- 타권역 추가운임은 미적용

##### <본사 의견>

- 다만 얼마라도 인상할 수 있도록 업체측과 단가 협상을 통한 최소한의 노력을 요청드리는 차원
- 현실적으로 인상이 불가한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여 재승인을 내주고 있음

※ 홈쇼핑 직택배에 대한 단가 적용 변경 검토 : 현재 15% >2,750원<17% --> 기준 금액의 인하 (2,500원 정도)

## 2. 단가 가이드라인 조정

### 5) 경쟁사 비교

(단위:원, cm, Kg, 부가세 포함)

구분	급지 및 기준 월간 물동량		S타입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비고
			60cm 이하	80cm 이하	100cm 이하	120cm 이하	160cm 이하	
한진 (4/1일부)	A급지	5백개 미만	2,500	2,800	3,000	3,500	5,000	- 지점별로 일부 상이한 점 고려 - 중량물, 부피성, 냉장냉동 별도  <급지 비교> - A급지 : 롯데 A, B - B급지 : 롯데 C, D - C급지 : 롯데 E, F, G
		5백개 이상	2,300	2,400	2,800	3,400	4,500	
		2천개 이상	2,000	2,200	2,500	3,000	4,000	
		5천개 이상	1,800	1,900	2,400	3,000	4,000	
	B급지	5백개 미만	2,700	2,900	3,300	3,700	5,000	
		5백개 이상	2,600	2,700	3,300	3,700	4,700	
		2천개 이상	2,200	2,400	2,800	3,300	4,200	
		5천개 이상	2,000	2,200	2,600	3,100	4,100	
	C급지	5백개 미만	3,000	3,000	3,500	4,000	5,000	
		5백개 이상	2,900	3,000	3,500	4,000	5,000	
		2천개 이상	2,500	2,800	3,000	3,500	4,500	
		5천개 이상	2,300	2,500	2,800	3,200	4,200	

※ 작년 11월부터 재계약 거래처를 대상으로 추진해옴

#### <신규 계약>

- 가이드라인 이하 판매 불가
- C, D타입 단독출고 불가
- 영업이익율 10%대 기준으로 입고 터미널 사정에 따라 사안별 검토

#### <재계약>

- 신규 계약과 동일 가이드라인 적용
- 기존 단가대비 전타입 +200원 인상 (D타입 +500원)
- 월 200건 이하 선불 전환, 100건이하 4,000원 수준 계약 원칙
- 영업이익율 5%대 기준으로 입고 터미널 사정에 따라 사안별 검토 단, 기존 계약 검토시 적자, 체적위반, 물량미달, 저단가 등의 경우 추가인상 필요 (단가 인하 불가)

## 2. 단가 가이드라인 조정

### 5) 경쟁사 비교

(단위:원, cm, Kg, 부가세 포함)

구분	구간 및 기준 월간 물동량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E타입	F타입	비고
			80cm 이하	100cm 이하	120cm 이하	160cm 이하	190cm 이하	220cm 이하	
CJ대한통운 (4/1일부)	1	500개 미만	2,750	3,200	3,800	5,000	10,000	15,000	- 아이스박스 : +300원 - 생수.음료.복사지 : 2,650원 - 쌀 : 2,700 / 3,500원 - 화장지 : 단가표 적용  <급지 비교> - 롯데 D그룹
	2	500개 이상	2,550	3,000	3,400				
	3	1천개 이상	2,350	2,800	3,200				
	4	2천개 이상	2,250	2,700	3,000	4,500			
	5	3천개 이상	2,150	2,600	2,800				
	6	5천개 이상	2,050	2,500	2,700	4,000			
	7	1만개 이상	2,000	2,400	2,600				
	8	2만개 이상	1,950	2,300	2,500				
	9	3만개 이상	1,900	2,200	2,500				
	10	5만개 이상	1,850	2,100	2,500				

-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거래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

구분	규격	~100cm 이하	110cm 이하	120cm 이하	130cm 이하	140cm 이하	150cm 이하	160cm 이하	비고
로젠 (4/1일부)	B2C	2,200	2,400	3,000	3,500	4,000	5,000	6,000	
	C2C	3,500			4,000	5,000	6,000	7,000	
	중량	~10Kg 이하	20Kg 이하	25Kg 이하	30Kg 이하	비고			
	B2C	3,500	5,000	6,000	7,000	쌀 제외			
	C2C	4,000	6,000	7,000	10,000				

### 3. 기타운임 적용을 통한 분류비 분담방안

사회적 합의기구의 노조측 주장은 국토부 산업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 나온 300원을 전부 택배사원에게 배송수수료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에 이를 택배 단가에 반영할 경우 실제로는 약 1천원 상당의 단가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후 이를 두고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 택배 단가 인상안 : 5월 25일 사회적 합의기구 발표 예정

#### 1) 운영안

분류비 10원을 나눠서 분담했던 바와 같이 사회적 합의기구와는 별개로 우리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현재 본사와 기타운임 적용 방식을 통해서 인상되는 금액에 대한 배분을 협의중에 있음

ex) 100원 적용시

(단위:원)

구분	현재	변경후	기타운임 분배			비고
			집하점	본사	배송점	
택배운임 등록	실제 수령 운임	기본운임 + 기타운임	30%	20%	50%	반품집하 제외
			30	20	50	

#### 2) 전제 조건

-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결정되는 단가 인상안에 따라 실제 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 단가 구간별로 기타운임 적용금액 차등화

ex) 저단가 구간은 적용 최소화 ~ 고단가 구간에서 가능한 최대 금액 적용 등 단가대별 차등 적용

- 집하 수수료의 차감 최소화를 위해 급격하게 집하 수수료가 변하는 구간들에 대한 재검토 요청

ex) ~₩1,800 (14%) : ~₩1,900 (17%) 3%차이 발생, ~₩2,000 (18%) : ~₩2,099 (21%) 3%차이 발생 등 --> 1% 조정 의견

#### 3) 대리점의 수수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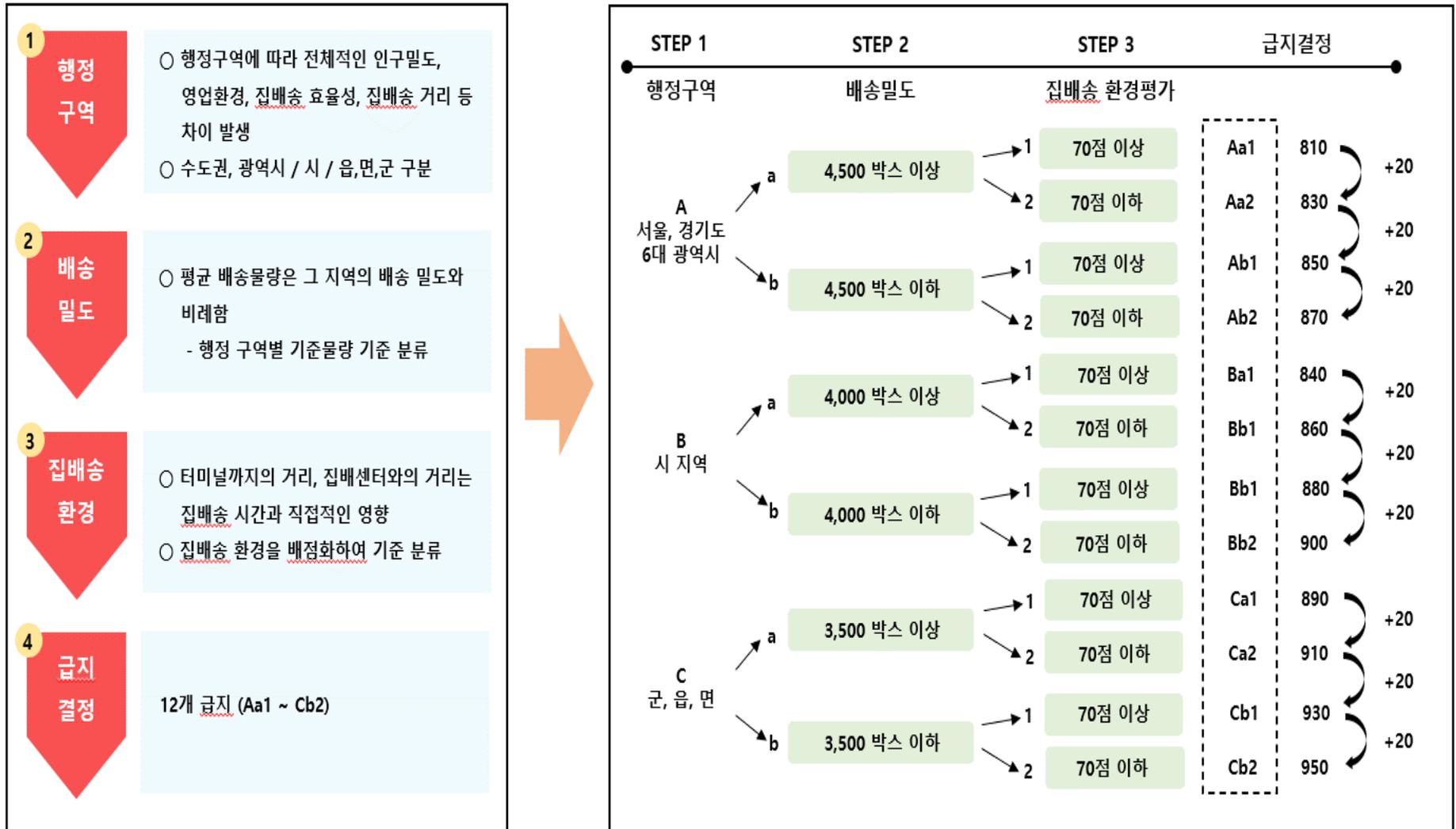
- 기타 운임 적용시 부득이 일부 대리점에서 수수료 차감(-) 발생될것으로 예상됨

(수수료 차감액이 많은 대리점에 대한 별도 조정안 or 지원책 마련 필요)

※ 본사 수익증 일부 금액을 대리점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사용하는 방안 : 최소 연간 4억 5천만원(박스당 1원) ~ 9억(2원)

#### 4. 대리점 급지선정 기준 안내 (참고 자료)

##### 1) 급지선정기준표



#### 4. 대리점 급지선정 기준 안내 (참고 자료)

##### 2) 집배송 환경 평가기준 (2018.4.1일부 적용중)

구분	배점	상세 내용	배점	비고
터미널과의 거리	40	1) 터미널 관내 집배센타 / 서들 연계 행정단위 기준 - 'A', 'B' : 30Km 이내 - 'C' : 60Km 이내	40	
		2) 집배센타 / 서들 연계 행정단위 기준 - 'A', 'B' : 30Km 초과 - 'C' : 60Km 초과	20	
분류 - 배송지 거리 (최단/최장 중간값)	60	1) 행정단위 기준 'A', 'B'		
		- 3Km 미만	60	
		- 3Km 이상 ~ 5Km 미만	50	
		- 5Km 이상 ~ 10Km 미만	40	
		- 10Km 이상 ~ 20Km 미만	30	
		- 20Km 이상	20	
		2) 행정단위 기준 'C'		
		- 5Km 미만	60	
		- 5Km 이상 ~ 10Km 미만	50	
		- 10Km 이상 ~ 20Km 미만	40	
- 20Km 이상 ~ 30Km 미만	30			
- 30Km 이상	20			

※ Mega허브 오픈시 : 터미널과의 거리는 폐지하고, 분류 거점 - 배송지 배점만 활용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자차서들 운영 폐지 + 대리점 급지 조정 가능성 존재 (Mega TML 연계거리 기준)
- 집하 그룹 단일화 : 물량을 Base로 하는 단가 가이드 라인 설정 추정)
- 저단가 구간 : 집하수수료율 인상, 물량이 집중되는 구간+고단가 구간 : 일부 하향 조정 가능성 존재 (CJ대한통운 수준)

#### 4. 대리점 급지선정 기준 안내 (참고 자료)

##### 3) 급지선정 배송밀도 관련 수정보완 의견

(단위:Box, 수량, VAT포함)

구분	2020.12	2021.1	2021.2	2021.3	2021.4	월평균	비고
배송수량	43,949,367	38,423,551	35,279,959	39,932,488	42,164,626	39,949,998	
택배사원수	9,364						
1인당	4,693	4,103	3,768	4,264	4,503	4,266	
배송수수료	910						
수수료 합계	4,271,030	3,734,027	3,428,531	3,880,667	4,097,588	3,882,368	

※ 산출 조건 : 본사(지점) 배송 제외 / 평균단가 2,262원, 배송수수료 Ba2와 Bb1의 중간값 적용

##### <협의회 의견>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생활화로 인해 택배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행정구역 단위로 차이는 있어도 평균 배송물량은 택배사원 1인당 역대 최대치를 기록중이기에 배송밀도 또한 상당히 높아진 상태임

※ 택배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지선정 기준중 배송밀도에 대한 기준의 수정보완 필요성 대두

행정구역	현재 배송밀도 기준	수정의견	비고
서울,경기, 6대 광역시	4,500박스	4,700박스	
시 지역	4,000박스	4,200박스	
군. 읍. 면	3,500박스	3,700박스	

# 상조회 운영 관련

## 1. 회원 가입현황

### 롯데택배 대리점 상조회 회원 현황표

(2021년 5월 12일)

지부별 가입점소 현황				
구분	수도권서부	강원	호남	의류특화
개설 대리점	241	40	111	56
가입 회원사	182	39	104	46
미가입 대리점	59	1	7	10
가입율	75.5%	97.5%	93.7%	82.1%

구분	수도권동부	충청	영남	총 계
개설 대리점	207	108	223	986
가입 회원사	161	90	208	830
미가입 대리점	46	18	15	156
가입율	77.8%	83.3%	93.3%	84.2%

## [롯데택배 대리점 상조회 안내]

### 1. (대리점계약서) 제4조 계약이행보증

[상조회 의무가입]

(대리점계약서) 제4조 계약이행보증

⑦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 중에 발생하는 화물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리점 계약기간 동안 집배송화물에 대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이 운영하는 **상조회**를 가입 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적재보험이나 상조회 가입은 필수 사항으로 반드시 둘 중 하나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 2.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제도

2004.12.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5톤 이상의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시행

#### <의무보험가입대상>

가입대상	대상요건	보상한도액(1사고당)	최소공제금액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5톤이상 총중량 10톤이상	차량당 2천만원 이상	20만원
운송주선사업자	국내운송주선 사업자 (이사화물주선 제외)	사업자당 2천만원 이상	20만원
운송가맹사업자	운송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	사업자당 2천만원 이상	20만원

※ 최소공제금액 20만원은 법정 최저가입 보상한도액 2,000만원의 1%임

## 2. 회비 및 청구안내

### 1) 회비 적용요율 변경 (2021.4.1일부)

(단위:원, VAT포함)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기본회비	회비적용 요율	기본회비	회비적용 요율	변경사유	
일반대리점	2만원	배송매출의 0.1%	2만원	배송매출의 0.1%	좌동	
특화대리점		배송매출의 0.2%		배송매출의 0.15%		

※ 상기 적용요율은 2021년에만 적용되며, 2022년 적용요율은 연말 상조회 운영위에서 다시 결정할 예정임

### 2) 배송지원 옴니 (omni) 확대 운영 (2021.2.1일부)

구분	경사		조사	기타		비고
	본인 결혼	기타	배우자 및 직계, 처부모	질병 입원	코로나 등 천재지변 재난시	
최대 지원일수	5일	1일	5일	14일		

- 지원금액 : 배송 Box당 W250원 (본사 지원금 W250원 별도)

※ 대리점 배송수수료 + W250원 > 실제 용차비용 = 차액만큼만 지원

- 14일을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조회 운영위의 의결로 초과 적용 가능

- 지원요청 방법 : ①네이버 웨스 경조사란 공지(질병,입원은 지점과 협의) ②배송 용차 사용 및 선 비용결재 ③지점 배송실적 통보 ④상조회 비용 지급(25일경)

### 3) 경조사 지원금액 일부 조정 (2021.3.16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본인 및 배우자 조사	근조화 + 조의금 50만원 / 1회 지급	근조화 + 조의금 300만원 / 1회 지급	

- 회원의 대리점 복수 운영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경조사비 지급범위는 실운영자 1인으로 한정

- 지원요청 방법 : 네이버 웨스 경조사란 공지 및 지역이사 통보 (본사 지원 : 해당 지점에 별도 통보 필요)

(가능한 회장님 또는 지부의 부회장님이 직접 조문하여 위로금을 전달)

### 3. 회비 할인 및 할증안내

#### 1) 적용회비 및 할인내역

(단위:원, VAT포함)

구분	상조회비 적용		가입년수에 따른 할인내역						비고
	기본회비	회비적용 요율	당해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일반대리점	2만원	배송매출의 0.1%	100%	90%	80%	70%	60%	50%	6년차 경과 후 다시 100% 적용
특화대리점		배송매출의 0.15%							

#### 2) 위로금 지원

##### (1) 물적 손해

구분	물적 손해에 따른 지원 한도			회비 납부 횟수별 지급율					비고
	1천만원 미만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1회	3회	6회	9회	12회	
위로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	30%	50%	70%	100%	

##### (2) 신체 손해

구분	수술 위로금 지급 한도				- 골절 : 터미널, 집배센타내 상하차 및 분류작업시 발생한 골절사고 - 암(간,위,대장,폐 등), 뇌출혈, 심근경색 등 생명을 담보로 한 위급상황 또는 수술시 지원
	골절사고	초기 암수술	중기 암수술	말기 암수술	
위로금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약관에 규정된 지원사항 이외 기타 차량사고나 부상, 갑상선암 등의 수술인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개인 보험 등으로 처리

#### 3) 화물사고 지원에 따른 회비 할증

구분	화물사고 지원금별 할증율					할증적용기간	비고
	3백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할증율	10%	30%	50%	70%	100%	지급 익월부터 1년간	

#### 4. 협의회 법인화 이후 통합운영 방안

롯데택배 대리점상조회는 본사와의 위수탁 체결하고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계약조건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하는 조직으로 택배화물을 배송하는 업무의 특성상 1톤탑차가 대부분으로 법적으로 적재화물보험 의무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차량 사고나 적재화물의 도난 사고 발생시 대리점에서 입게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성격의 임의 단체임. 하지만 본래의 운영 취지와는 달리 현재는 적재보험 성격보다는 회원사나 구성원들의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 지원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명확한 성격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롯데 그룹(지주) 감사의 지적 사항이기도 하여 본사에서 협의회와 상조회에 대한 회비를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주는 업무에 부담이 있는 상황임
- ※ 사내 교육사업과 노무관련 업무, 대리점 복지증진 사업 등의 명분 : 상호 상생을 위한 필수 조직으로 필수 조직

##### 1) 운영목적의 규정 재정립

구분	설립 취지	실제 운영	향후 진행방향	비고
운영 성격	적재화물보험	적재화물보험 + 복지 지원	복지 지원 + 적재화물보험	

##### 2) 협동조합 설립 후 검토사항

- 본사 상생기금 지원시 : 협의회비 일부 인하 적용 방안 검토
- 추진 사업규모(복지 지원사업 외)에 따른 회비의 증감 방안 검토

구분	현재	변경안	비고
일반 대리점	기본회비 2만원 + 배송매출의 0.1%	- 기본회비 미적용 또는 1만원 축소 방안 - (배송+집하) 매출 X 비율	
특화 대리점	기본회비 2만원 + 배송매출의 0.15%		

- ※ 회비 납부금에 대한 비용 정산 : 협동조합을 통한 세금 계산서 발행 검토
- 차기 상조회 운영위원회에서 약관 및 규칙 수정 추진

"오늘도 다정한 인사와 밝은 미소를..."

##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

☞ 주 소 :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217 경김회관 405호

☎ 전 화 : 02-2066-3395/6

☎ 팩 스 : 02-2066-3397